

2026년 2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사업 계획 및 업무처리기준

기부자	관련 페이지
1. 가수 윤하	2p
2. 공수 김용호	4p
3.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원인재(유형1)	8p
4.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원인재(유형2)	12p
5. 국민연금	16p
6. 김재영	19p
7. 나이스(NICE)그룹	22p
8. 상미당 행복한 장학금	27p
9. 연암장학회	29p
10. 정인욱학술장학재단(대학생)	31p
11. 키움증권	34p
12. 포스코 희망이음	36p
13. 한국가스공사LnG(유형1)	41p
14. 한국가스공사LnG(유형2)	45p
15. 한국가스공사LnG(유형3)	47p
16. 한국교직원공제회	49p
17. 한국토지주택공사	50p
18. iM사회공헌재단	53p
19. JDC 환경장학금	56p
20. KRX국민행복재단	59p
21. KOSAF기부펀드 중위소득	68p
22. KOSAF기부펀드 블루버드	70p
23.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사업 업무처리기준	76p

1. 가수 윤하

1. 사업 목적

- ☐ 저소득층 기초과학 전공 대학생 대상 생활비 장학금 지원으로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

2. 사업 내용

- ☐ 지원규모: 60백만 원*(250만 원 × 24명 × 1개 학기)

* 가수 윤하 5천만 원, 유튜버 슈카 천만 원

-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전공대, 대학원대, 원격대학(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등),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신입생·편입생 제외 / 기부장학금 신청 시작일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1개 학기 이상인 자

- ☐ 신청자격: 학자금 지원구간 6구간 이하이며 학과명에 아래의 단어가 포함된 자

○ 학과명 포함 단어: 물리, 천문

※ 단, 물리치료학과 등 의료·보건계열 학과는 제외

-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 지원인원: 24명

- ☐ 지원내용: 학기당 25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 지원기간: 1개 학기('26년 2학기)

- ☐ 평가기준

○ (1차) 가계소득(30점) + 성적(70점), 2배수 선발

※ 1차 심사 대상 인원(신청자격 및 성적기준 해당자)이 1차 선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심사 생략 가능

○ (2차) 자기소개서(100점)

※ 자기소개서 평가 심사위원(3인): 기부자 3인

○ 동점자 처리 기준: 성적 상위자(백분위 점수) >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 직전 학기 이수학점 높은 자 > 저학년 > 연소자

※ 동점자 처리 기준은 1차, 2차 심사에 모두 적용

붙임

자기소개서

○ 평가기준

항목	진솔성	논리성	성실성	성장 가능성	목적 부합성	합계
배점	20	20	20	20	20	100
점수						

○ 채점기준

채점기준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점수	20~18	17~15	14~12	11~9	8~5

○ 자기소개서 작성 항목

1. 본인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세 가지 키워드를 선택하고, 그 키워드가 왜 자신을 나타내는지 소개해 주세요. (공백 포함 500자 이내)
2. 현재 전공을 선택하게 된 계기와, 스스로 깊이 몰입하여 탐구한 경험을 이야기해주세요. (공백 포함 500자 이내)
3. 지금까지의 삶에서 가장 큰 도전은 무엇이었나요? 그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는지,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배운 점은 무엇인지 이야기해주세요. (공백 포함 1,000자 이내)
4. 앞으로의 학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를 통해 성취하고 싶은 학문적·사회적 목표를 작성해주세요. (공백 포함 1,000자 이내)
5. 본 장학금이 왜 필요한지, 장학금을 받게 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작성해주세요. (공백 포함 500자 이내)

2. 공수 김용호

1. 사업 목적

- 개인 기부자 공수(空手) 김용호 기부금을 활용하여 저소득층 및 사회적 배려계층 대학생 대상 생활비 장학금 지원으로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 생활비 장학금: 750백만 원(250만 원 × 50명 × 최대 6학기)
- 인재육성 프로그램: 50백만 원(총 1회)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대학교 재학생

- ※ 전문대, 전공대, 대학원대, 원격대학(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등),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 신입생·편입생 제외 / 기부장학금 신청 시작일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2개 학기 이상인 자

□ 신청자격: 아래 ① ~ ②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학자금 지원구간 6구간 이하

② 공수 김용호 인재육성 프로그램* 참가 가능한 자 (1회 진행)

- * 인재육성 프로그램 일정 및 세부 내용은 합격자 대상 개별 안내 예정('27년 1월 개최 예정)
- ※ 상기 일정은 기부자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함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지원인원: 50명

□ 지원내용: 학기당 25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지원기간: 선발 후 4년 이내*, 최대 6학기(회) 지원

- * 지원기간은 장학생 선발 해당 학기 포함 총 4년 이내

- (예시1) 휴학없이 학업 유지: '26-2학기 최초 선발 => '29-1학기 최종 지원 (총 6회)
- (예시2) 휴학 1회(1개 학기): '26-2학기 최초 선발 => '29-2학기 최종 지원 (총 6회)
- (예시3) 휴학 2회(2개 학기) 이상: '26-2학기 최초 선발 => '30-1학기 최종 지원 (총 6회)

- ※ 장학생 선발 후 휴학 시(군휴학 포함) 장학생 자격 유지

- ※ 장학생 선발 후 졸업·편입·자퇴 시 장학생 자격 상실(탈락)

□ 평가기준

○ (1차) 가계소득(30점) + 성적(70점) + 가산점*(5점), 1.5배수 선발

* 가산점 대상(5점 부여, 항목 간 중복 부여 불가)

- 사회적 배려계층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학생가장,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이동 포함), 다문화 가정

- 봉사활동: 봉사활동 실적 50시간 이상 대학생

※ 봉사활동 실적 인정 기간: '26년 1월 1일 ~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 시작일 전일

※ 1차 심사 대상 인원(신청자격 및 성적기준 해당자)이 1차 선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심사 생략 가능

○ (2차) 자기소개서(100점)

※ 자기소개서 평가 심사위원(2인): 기부자 2인

○ 동점자 처리 기준: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 성적 상위자(백분위 점수) > 직전 학기 이수학점 높은 자 > 연소자

※ 동점자 처리 기준은 1차, 2차 심사에 모두 적용

□ 계속장학생 선발 기준: 아래 ① ~ ②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성적 및 학점)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성적 및 학점 기준 미달 시 해당 학기 장학금 미지급(단, 계속장학생 자격은 유지)

※ 졸업 학기에는 최소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② (인재육성 프로그램) 공수 김용호 인재육성 프로그램* 참여

* 미참여 시 계속장학생 영구 탈락

※ 질병·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불참 시 관련 증빙자료 제출 필수(참여 인정 여부는 기부자 협의 후 결정)

□ 제출서류: 사회적 배려계층 확인 서류 또는 봉사활동 증명서 (택1 선택 제출)

※ 장학금 신청자와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자의 가족관계는 '26-2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함(대상자가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증빙서류 미제출 및 잘못된 서류를 제출할 경우 심사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장애인: 장애인증명서(또는 장애인등록증)

※ 장애인 인정 범위: 장학금 신청자 본인

○ 북한이탈주민(북향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북한이탈주민 인정 범위: 장학금 신청자 본인 또는 자녀

○ 학생가장: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의 사망으로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만 34세 이하* 대학생(기혼자 제외)

* 만 나이 기준은 신청 시작일 기준으로 함

○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 포함)

구분		증빙서류	발급처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 5년 경과 청년 포함)		보호종료확인서	(‘20.9.30. 이전 보호종료)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20.10.1. 이후 보호종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퇴소확인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필수)	아동복지시설
보호연장 아동	아동복지시설*	입소사실확인서 또는 재원증명서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시·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추가 제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 증빙서류 상 보호기관 유형이 ‘아동복지시설’로 명시되어 있지 않을 시 제출	

* 「아동복지법」상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만 해당 (일시보호시설, 청소년쉼터, 부모동반시설 등은 제외)

※ 당해 학기 통합신청으로 자립준비청년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관련 서류 제출 생략 가능

○ 다문화 가정

※ 외국인 부 또는 모에서 태어난 자녀(기혼자 제외)

- 한국 국적 취득 전: (부 또는 모)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 한국 국적 취득 후: (부 또는 모 중 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등 국적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단, 기본증명서 상 이전 국적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제적등본 제출

○ 봉사활동 증명서: 사회복지 자원봉사 실적 인증서(VMS)(또는 자원봉사활동 확인서(1365))

※ ‘VMS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 또는 ‘1365 자원봉사포털’ 발급 증빙서류만 인정
(타 증빙서류 불가)

※ 봉사활동 실적 인정 기간: ’26년 1월 1일 ~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 시작일 전일

붙임

자기소개서

○ 평가기준

항목	진솔성	논리성	성실성	성장 가능성	목적 부합성	합계
배점	20	20	20	20	20	100
점수						

○ 채점기준

채점기준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점수	20~18	17~15	14~12	11~9	8~5

○ 자기소개서 작성 항목

1. 자기소개(성장과정 및 가치관 등) (공백 포함 1,000자 이내)

2. 향후 학업 계획(진로 목표, 학업 수행 계획 등) (공백 포함 1,000자 이내)

3.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원인재(유형1)

1. 사업 목적

- ☐ 강원지역 저소득층 대학생 대상 생활비 장학금 지원으로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

2. 사업 내용

- ☐ 지원규모: 48백만 원(300만 원 × 16명 × 1개 학기)
-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 전공대, 대학원대, 원격대학(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등),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 신입생·편입생 제외 / 가부장학금 신청 시작일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1개 학기 이상인 자
- ☐ 신청자격
 - 강원특별자치도 소재*(단, 원주시 소재 대학교 재학생은 신청 불가) 대학교 재학생 중 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이하인 자
 - * 지역 구분: 학과가 소속된 캠퍼스 소재지 기준 적용
-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 지원인원: 16명
- ☐ 지원내용: 학기당 30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 지원기간: 1개 학기('26년 2학기)
- ☐ 평가기준
 - (1차) 가계소득(50점) + 성적(50점) + 가산점*(5점), 2배수 선발
 - * 가산점 대상(5점 부여, 항목 간 중복 부여 불가)
 - 사회적 배려계층: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학생가장,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 포함), 한부모 가정의 자녀, 다문화 가정 대학생
 - ※ 1차 심사 대상 인원(신청자격 및 성적기준 해당자)이 1차 선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심사 생략 가능
 - (2차) 자기소개서(100점)
 - ※ 자기소개서 평가 심사위원(2인): 강원도청 1인,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 동점자 처리 기준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 성적 상위자(백분위 점수) > 연장자
 - ※ 동점자 처리 기준은 1차, 2차 심사에 모두 적용

□ 제출서류: 사회적 배려계층 확인 서류(택1 선택 제출)

※ 장학금 신청자와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자의 가족관계는 '26-2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함(대상자가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증빙서류 미제출 및 잘못된 서류를 제출할 경우 심사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장애인: 장애인증명서(또는 장애인등록증)

※ 장애인 인정 범위: 장학금 신청자 본인

○ 북한이탈주민(북향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북한이탈주민 인정 범위: 장학금 신청자 본인 또는 자녀

○ 학생가장: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의 사망으로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만 34세 이하 대학생(기혼자 제외)

* 만 나이 기준은 신청 시작일 기준으로 함

○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 포함)

구분		증빙서류	발급처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 5년 경과 청년 포함)		보호종료확인서	(‘20.9.30. 이전 보호종료)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20.10.1. 이후 보호종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퇴소확인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필수)	아동복지시설
보호연장 아동	아동복지시설*	입소사실확인서 또는 재원증명서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시·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추가 제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 증빙서류 상 보호기관 유형이 ‘아동복지시설’로 명시되어 있지 않을 시 제출	

* 「아동복지법」상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만 해당 (일시보호시설, 청소년쉼터, 부모동반시설 등은 제외)

※ 당해학기 통합신청으로 자립준비청년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관련 서류 제출 생략 가능

○ 한부모 가정의 자녀*: 한부모가족 증명서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 가정의 자녀(신청자 본인이 보호 대상 자녀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산점 인정)

※ 신청자 본인의 연령 초과 등으로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위 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가산점 부여 불가

○ 다문화 가정

※ 외국인 부 또는 모에서 태어난 자녀(기혼자 제외)

- 한국 국적 취득 전: (부 또는 모)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 한국 국적 취득 후: (부 또는 모 중 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등 국적 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단, 기본증명서 상 이전 국적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제적등본 제출

□ 기타사항

○ 장학증서 수여식 참석자 선정

- 기부자 의사에 따라 선발된 장학생 중 장학증서 수여식 참석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장학생은 장학증서 수여식에 반드시 참석해야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장학증서 수여식에 불참하는 경우 장학금 환수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음

붙임

자기소개서

○ 평가기준

항목	진솔성	논리성	성실성	성장 가능성	목적 부합성	합계
배점	20	20	20	20	20	100
점수						

○ 채점기준

채점기준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점수	20~18	17~15	14~12	11~9	8~5

○ 자기소개서 작성 항목

1. 자기소개(성장 과정 및 가치관 등) (공백 포함 500자 이내)
2. 푸른등대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원인재 기부장학금 지원 동기 (공백 포함 500자 이내)
3. 진로 목표 및 달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 (공백 포함 1,000자 이내) ※ 어학성적, 자격증 취득, 수상실적 포함
4.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과 계획 (공백 포함 500자 이내)

4.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원인재(유형2)

1. 사업 목적

- ☐ 원주시 지역 저소득층 대학생 대상 생활비 장학금 지원으로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

2. 사업 내용

- ☐ 지원규모: 48백만 원(300만 원 × 16명 × 1개 학기)
-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 전공대, 대학원대, 원격대학(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등),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 신입생·편입생 제외 / 가부장학금 신청 시작일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1개 학기 이상인 자
- ☐ 신청자격
 - 원주시 소재* 대학교 재학생 중 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이하인 자
 - * 지역구분: 학과가 소속된 캠퍼스 소재지 기준 적용
-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 지원인원: 16명
- ☐ 지원내용: 학기당 30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 지원기간: 1개 학기('26년 2학기)
- ☐ 평가기준
 - (1차) 가계소득(50점) + 성적(50점) + 가산점*(5점), 2배수 선발
 - * 가산점 대상(5점 부여, 항목 간 중복 부여 불가)
 - 사회적 배려계층: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학생가장,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 포함), 한부모 가정의 자녀, 다문화 가정 대학생
 - ※ 1차 심사 대상 인원(신청자격 및 성적기준 해당자)이 1차 선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심사 생략 가능
 - (2차) 자기소개서(100점)
 - ※ 자기소개서 평가 심사위원(2인): 원주시청 1인,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 동점자 처리 기준: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 성적 상위자(백분위 점수) > 연장자
 - ※ 동점자 처리 기준은 1차, 2차 심사에 모두 적용

□ 제출서류: 사회적 배려계층 확인 서류(택1 선택 제출)

※ 장학금 신청자와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자의 가족관계는 '26-2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함(대상자가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증빙서류 미제출 및 잘못된 서류를 제출할 경우 심사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장애인: 장애인증명서(또는 장애인등록증)

※ 장애인 인정 범위: 장학금 신청자 본인

○ 북한이탈주민(북향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북한이탈주민 인정 범위: 장학금 신청자 본인 또는 자녀

○ 학생가장: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의 사망으로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만 34세 이하 대학생(기혼자 제외)

* 만 나이 기준은 신청 시작일 기준으로 함

○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 포함)

구분		증빙서류	발급처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 5년 경과 청년 포함)		보호종료확인서	('20.9.30. 이전 보호종료)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20.10.1. 이후 보호종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퇴소확인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필수)	아동복지시설
보호연장 아동	아동복지시설*	입소사실확인서 또는 재원증명서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시·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추가 제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 증빙서류 상 보호기관 유형이 '아동복지시설'로 명시되어 있지 않을 시 제출	

* 「아동복지법」상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만 해당 (일시보호시설, 청소년쉼터, 부모동반시설 등은 제외)

※ 당해학기 통합신청으로 자립준비청년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관련 서류 제출 생략 가능

○ 한부모 가정의 자녀*: 한부모가족 증명서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 가정의 자녀(신청자 본인이 보호 대상 자녀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산점 인정)

※ 신청자 본인의 연령 초과 등으로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위 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가산점 부여 불가

○ 다문화 가정

※ 외국인 부 또는 모에서 태어난 자녀(기혼자 제외)

- 한국 국적 취득 전: (부 또는 모)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 한국 국적 취득 후: (부 또는 모 중 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등 국적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단, 기본증명서 상 이전 국적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제적등본 제출

□ 기타사항

○ 장학증서 수여식 참석자 선정

- 기부자 의사에 따라 선발된 장학생 중 장학증서 수여식 참석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장학생은 장학증서 수여식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장학증서 수여식에 불참하는 경우 장학금 환수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음

붙임

자기소개서

○ 평가기준

항목	진솔성	논리성	성실성	성장 가능성	목적 부합성	합계
배점	20	20	20	20	20	100
점수						

○ 채점기준

채점기준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점수	20~18	17~15	14~12	11~9	8~5

○ 자기소개서 작성 항목

1. 자기소개(성장 과정 및 가치관 등) (공백 포함 500자 이내)
2. 푸른등대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원인재 기부장학금 지원 동기 (공백 포함 500자 이내)
3. 진로 목표 및 달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 (공백 포함 1,000자 이내) ※ 어학성적, 자격증 취득, 수상실적 포함
4.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과 계획 (공백 포함 500자 이내)

5. 국민연금

1. 사업 목적

- ☐ 국민연금 수급자, 수급자의 자녀 중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키워가는 대학생 대상 생활비 장학금 지원으로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

2. 사업 내용

- ☐ 지원규모: 165백만 원(150만 원 × 110명 × 1개 학기)
-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 전공대, 대학원대, 원격대학(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등),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 신입생·편입생 제외 / 기부장학금 신청 시작일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1개 학기 이상인 자
- ☐ 신청자격
 - 국민연금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자녀 중 학자금 지원구간 6구간 이하인 자
 - 유족연금·장애연금 수급자 또는 그 자녀
 - 노령연금 수급자 자녀
 - ※ 장애일시보상금, 사망 관련 일시금 수령자 및 그 자녀의 경우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음
 - ※ 장학금 신청자의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내역(가구원)에 반드시 수급자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 ※ 푸른등대 국민연금 기부장학금 기수혜자는 선발 제외
-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 지원인원: 110명* (전북지역인재 10명 필수 포함)
 - ※ [붙임] 푸른등대 국민연금 기부장학금 지역별 선발 인원 에 따라 선발
- ☐ 지원내용: 학기당 15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 지원기간: 1개 학기('26년 2학기)
- ☐ 평가기준
 - 가계소득(60점) + 성적(40점)
 - 동점자 처리 기준: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 성적 상위자(백분위 점수) > 연소자

□ 제출서류: 국민연금 수급증명(지급내역)*

-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지사(방문·팩스·우편) 등을 통해서 발급 가능, 연금수급증서 등의 다른 증빙 서류로 대체 불가함
- ※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 마감일 기준 지급내역 있는 경우 수급자 인정 가능
- ※ 장학금 신청자와 수급자의 가족관계는 '26-2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심사함(수급자는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 증빙서류 미제출 및 잘못된 서류를 제출할 경우 심사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붙임
푸른등대 국민연금 기부장학금 지역별 선발 인원

지역 구분	최종 선발 인원(명)
수도권	43
경상권	24
충청권	17
전북권	14
전남광주권	7
강원·제주권	5
합 계	110

※ 지역 구분은 학과가 소속된 캠퍼스 소재지 기준 적용

-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경상권**(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충청권**(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북권**(전북특별자치도), **전남광주권**(전남광주통합특별시(구 전라남도, 구 광주광역시)), **강원·제주권**(강원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 최종 지역별 선발 인원이 미충족될 경우, 기부자와 협의하여 미충족 인원은 심사 대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6. 김재영

1. 사업 목적

- ☐ AI 분야 진로에 관심이 있는 저소득층 우수 대학생 대상 안정적인 학업 여건을 제공하여 대한민국 미래 AI 산업을 이끌어갈 글로벌 핵심 인재 양성에 기여

2. 사업 내용

- ☐ 지원규모: 100백만 원(250만 원 × 20명 × 2개 학기)
-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 전공대, 대학원대, 원격대학(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등),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 신입생·편입생 제외 / 기부장학금 신청 시작일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2개 학기 이상인 자
 - ※ 심사 기준일 기준 '26년 2학기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된 자(심사 기준일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되지 않은 경우 10구간으로 간주)
- ☐ 신청자격: AI 분야 관련 진로를 꿈꾸는 대학생
-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 지원인원: 20명
- ☐ 지원내용: 학기당 25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 지원기간: 2개 학기('26년 2학기~'27년 1학기)
- ☐ 평가기준
 - (1차) 가계소득(50점) + 성적(50점), 2배수 선발
 - ※ 1차 심사 대상 인원(신청자격 및 성적기준 해당자)이 1차 선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심사 생략 가능
 - (2차) 자기소개서(100점)
 - ※ 자기소개서 평가 심사위원(2인): 기부자와 협의 후 진행(기부자 1인, 한국장학재단 추천위원 1인)
 - 동점자 처리 기준: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 성적 상위자(백분위 점수) > 연소자
 - ※ 동점자 처리 기준은 1차, 2차 심사에 모두 적용

☐ 계속장학생 선발 기준

- (성적 및 학점)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졸업학기에는 최소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제출서류

- [선택] 자기소개서 심사 참고자료(자유 양식 포트폴리오)

-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내용 중 증빙이 필요한 사항(자격증, 교육 이수증, 수상 실적 등)을 슬라이드 형태로 구성하여 하나의 PPT 파일*로 제출

* PPT 슬라이드 8장 이내로 PPT(또는 PDF) 파일 1부 제출

※ 위 자기소개서 심사 참고자료에 포함되는 모든 증빙 자료(자격증, 이수증 등)는 ‘발급기관, 취득(발급)일자, 본인 성명’이 명확히 식별될 수 있도록 이미지 형태로 첨부해야 함(증빙자료에 본인 인적사항 미포함 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별도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

※ 자기소개서 증빙 자료를 PPT 파일 내에 포함하지 않거나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이력은 자기소개서 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붙임

자기소개서

☐ AI 분야 커리어 시작을 위한 꿈 계획서

○ 평가기준

항목	진솔성	논리성	성실성	성장 가능성	목적 부합성	합계
배점	20	20	20	20	20	100
점수						

○ 채점기준

채점기준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점수	20~18	17~15	14~12	11~9	8~5

○ 자기소개서 작성 항목

1. 자기소개 및 가치관(공백 포함 500자 이내)
AI 분야 관련 관심 분야 및 관심을 갖게 된 계기, 향후 종사하고 싶은 분야 등
2. 졸업 후 AI 분야와 관련하여 이루고자 하는 꿈과 선정 사유(공백 포함 500자 이내)
본인의 꿈을 구체적으로 제시
3. 목표 달성을 위한 그 간의 성과 및 계획(공백 포함 500자 이내)
그 간의 성과와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

※ 포트폴리오 등 자기소개서 심사 참고용 자료 제출 가능(신청 시 업로드)

7. 나이스(NICE)그룹

1. 사업 목적

- ☐ AI 빅데이터 분석 등 관련 진로에 관심이 있는 저소득층 우수 대학생 대상 생활비 장학금 지원으로 대한민국 데이터 분석 산업의 인재 양성에 기여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 생활비 장학금: 40백만 원(200만 원 × 10명 × 2개 학기)
- 꿈성공 장학금: 10백만 원(100만 원 × 10명 × 1개 학기('27년 1학기))

※ 꿈성공 장학금은 계속장학생('27년 1학기) 수혜자에게만 지급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대학교 2~4학년* 재학생

* 학사원장 상 2~4학년인 경우

※ 전문대, 전공대, 대학원대, 원격대학(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등),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신입생·편입생 제외 / 기부장학금 신청 시작일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2개 학기 이상인 자

※ 심사 기준일 기준 '26년 2학기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된 자(심사 기준일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되지 않은 경우 10구간으로 간주)

☐ 신청자격: 아래 ① ~ ②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데이터 분석 관련 진로를 꿈꾸는 대학생

※ 데이터 분석가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거나 관련 교육 이수 및 수상 실적이 있는 경우 우대(자기소개서에 기재 및 관련 서류 제출)

② 나이스(NICE)그룹 제 2기 데이터 애널리스트 교육 과정*(인재육성 프로그램) 참가 가능한 자

* 오리엔테이션, 온라인 강의, 과제 수행 등 (※ 상세 커리큘럼은 [붙임1] 자료 참조 및 자세한 내용은 나이스(NICE)그룹에서 합격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지원인원: 10명

☐ 지원내용

- ('26-2학기) 20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27-1학기) 30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 및 꿈성공 장학금으로 정액 지원)

□ 지원기간: 2개 학기('26년 2학기 ~ '27년 1학기)

□ 평가기준

- (1차) 가계소득(20점) + 성적(80점), 3배수 선발
 - ※ 1차 심사 대상 인원(신청자격 및 성적기준 해당자)이 1차 선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심사 생략 가능
- (2차) 자기소개서(100점)
 - ※ 자기소개서 평가 심사위원(2인): 기부자 2인
- 동점자 처리 기준: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 성적 상위자(백분위 점수) > 직전학기 이수학점 높은 자 > 연소자
 - ※ 동점자 처리 기준은 1차, 2차 심사에 모두 적용

□ 계속장학생 선발 기준: 아래 ① ~ ②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나이스(NICE)그룹 장학생 유지 요건(기부자 지정 요건)*을 충족한 자

* 세부 유지 요건: [붙임3] 나이스(NICE)그룹 장학생 유지 요건 참조

② (성적 및 학점)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졸업 학기에는 최소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장학생 특전

- 나이스(NICE)그룹 입사 지원 시 서류 전형 우대*(단, 데이터 애널리스트 교육과정 우수 수료자에 한함)

* 대상 계열사: NICE평가정보, NICE디앤비, NICE디앤알, NICE피앤아이, NICE지니데이터

□ 제출 서류

- [선택] 자기소개서 심사 참고자료(자유 양식 포트폴리오)
 -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내용 중 증빙이 필요한 사항(자격증, 교육 이수증, 수상 실적 등)을 슬라이드 형태로 구성하여 하나의 PPT 파일*로 제출
 - * PPT 슬라이드 8장 이내로 PPT(또는 PDF) 파일 1부 제출
 - ※ 위 자기소개서 심사 참고자료에 포함되는 모든 증빙 자료(자격증, 이수증 등)는 '발급기관, 취득(발급)일자, 본인 성명'이 명확히 식별될 수 있도록 이미지 형태로 첨부해야 함(증빙자료에 본인 인적사항 미포함 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별도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
 - ※ 자기소개서 증빙 자료를 PPT 파일 내에 포함하지 않거나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이력은 자기소개서 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붙임1

나이스(NICE)그룹 제2기 데이터 애널리스트 대학생 교육 과정

□ 나이스(NICE)그룹의 실무 데이터로 배우는 데이터 애널리스트 양성 과정

커리큘럼	일정
[오프라인 행사①] 장학증서 수여식 및 오리엔테이션 ☞ 현직자 강의(1) 데이터 브로커는 무슨 일을 할까 ☞ 현직자 강의(2) NICE 데이터애널리스트의 일상 소개	'26년 11월 중
[세션1] 산업 도메인 탐색 및 데이터 활용 조사 ☞ 관심 산업 내 데이터의 '수집-가공-활용' 사례 분석	'26년 11월 ~ 12월 (2개월)
[온라인 교육] 파이썬을 활용한 금융데이터 분석 과정 ☞ [세션2] 수행을 위한 온라인 교육 과정 ☞ 교육내용: Python 기초, Pandas 기본, Pandas 활용 및 실습	
[오프라인 행사②] 현직자와 교류 행사 및 [세션1] 발표회 ☞ NICE그룹 IDC센터 투어 포함	'26년 12월 중
[세션2] NICE그룹 실무 데이터 분석 ☞ 현장 데이터를 다루며 분석 역량 및 문제해결 능력 습득	'27년 1월 ~ '27년 2월 (2개월)
[오프라인 행사③] 현직자와 교류 행사 및 [세션2] 중간 점검	'27년 1월 중
[오프라인 행사④] 수료식 및 [세션2] 최종 발표회 ※ 성실·우수 참석자 시상 포함	'27년 2월 중

※ 세부 커리큘럼 및 일정은 합격자 발표 이후 나이스(NICE)그룹에서 별도 안내 예정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세션2 수행을 위한 파이썬 기초 교육(온라인) 제공 예정

붙임2

자기소개서

☐ 데이터 분석가 분야 커리어 시작을 위한 꿈 계획서

○ 평가기준

항목	진술성	논리성	성실성	성장 가능성	목적 부합성	합계
배점	20	20	20	20	20	100
점수						

○ 채점기준

채점기준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점수	20~18	17~15	14~12	11~9	8~5

○ 자기소개서 작성 항목

1. 지난 3년을 돌아보며, 나만의 성장 스토리를 정리해 보세요. 본인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세 가지 키워드를 선택하고, 그 키워드가 왜 자신을 나타내는지 소개해 주세요.

※ 공백 포함 500자 이내

2. 자신의 꿈과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올해 어떤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계획인지 작성해 주세요. 또한, 장학금을 어떻게 활용할 예정인지 알려 주세요.

※ 2026년 2학기와 2027년 1학기 장학금 활용 계획 구분하여 작성

※ 공백 포함 1,000자 이내

3. 계획했던 일이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혔던 순간이 있었나요? 그 상황에서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극복했던 경험을 들려주세요.

※ 어떤 어려움이었고, 어떻게 해결했으며,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작성

※ 공백 포함 500자 이내

4.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 결정을 내리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본인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주세요.

※ 공백 포함 500자 이내

5. (선택) 데이터 분석가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거나 데이터 분석 관련 교육 이수 및 수상실적이 있으면 작성해주세요.

※ 본인의 데이터 분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도 함께 알려주시면 교육과정 설계 시 참고하겠습니다.

※ 데이터 분석가 관련 자격증 보유 시, 자격증명·발급기관 필수 기재

※ 데이터 관련 교육 이수 시, 교육과정명·교육기관 필수 기재

※ '□ 제출 서류 - [선택] 자기소개서 심사 참고자료' 부분을 참고하여 증빙자료 필수 제출

※ 공백 포함 500자 이내

붙임3**나이스(NICE) 그룹 장학생 유지 요건**

가. 나이스(NICE)그룹 제2기 데이터 애널리스트 교육과정 수료자

※ 수료 조건은 기부처(NICE 그룹)기준에 따름

나. 수여식 등 오프라인 행사 총 4회 중 3회 이상 참석

※ 질병이나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오프라인 행사 불참 시 관련 증빙자료 필수 제출,
참여 인정 여부는 나이스(NICE)그룹에서 결정

※ 위 유지 요건 적격 여부는 나이스(NICE)그룹에서 직접 심사 후 한국장학재단에 통보

8. 상미당 행복한 장학금

1. 사업 목적

- ☐ 사회적 배려계층 대학생 대상 생활비 장학금 지원으로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

2. 사업 내용

- ☐ 지원규모: 54백만 원(180만 원 × 30명 × 1개 학기)
-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 전공대, 대학원대, 원격대학(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등),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 신입생·편입생 제외 / 기부장학금 신청 시작일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1개 학기 이상인 자
- ☐ 신청자격: 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이하 대학생
-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 지원내용: 학기당 18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 지원인원: 30명
- ☐ 지원기간: 1개 학기('26년 2학기)
- ☐ 평가기준: 가계소득(50점) + 성적(50점) + 가산점(5점)*
 - * 가산점 대상(5점 부여, 항목 간 중복 부여 불가)
 - 사회적 배려계층: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학생가장,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 포함), 한부모 가정의 자녀, 다문화 가정 대학생
- ☐ 동점자 처리 기준: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 성적 상위자(백분위 점수) > 직전학기 이수학점 높은 자 > 저학년 > 연소자
- ☐ 제출서류: 사회적 배려계층 확인 서류(택1 선택제출)
 - ※ 장학금 신청자와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자의 가족관계는 '26-2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함(대상자가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 증빙서류 미제출 및 잘못된 서류를 제출할 경우 심사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장애인: 장애인증명서(또는 장애인등록증)
 - ※ 장애인 인정 범위: 장학금 신청자 본인
 - 북한이탈주민(북향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 북한이탈주민 인정 범위: 장학금 신청자 본인 또는 자녀

○ 학생가장: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의 사망으로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만 34세 이하 대학생(기혼자 제외)

* 만 나이 기준은 신청 시작일 기준으로 함

○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 포함)

구분		증빙서류	발급처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 5년 경과 청년 포함)		보호종료확인서	(‘20.9.30. 이전 보호종료)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20.10.1. 이후 보호종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퇴소확인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필수)	아동복지시설
보호연장 아동	아동복지시설*	입소사실확인서 또는 재원증명서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시·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추가 제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 증빙서류 상 보호기관 유형이 ‘아동복지시설’로 명시되어 있지 않을 시 제출	

* 「아동복지법」상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만 해당 (일시보호시설, 청소년쉼터, 부모동반시설 등은 제외)

※ 당해학기 통합신청으로 자립준비청년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관련 서류 제출 생략 가능

○ 한부모 가정의 자녀*: 한부모가족 증명서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 가정의 자녀(신청자 본인이 보호 대상 자녀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산점 인정)

※ 신청자 본인의 연령 초과 등으로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위 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가산점 부여 불가

○ 다문화 가정

※ 외국인 부 또는 모에서 태어난 자녀(기혼자 제외)

- 한국 국적 취득 전: (부 또는 모)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 한국 국적 취득 후: (부 또는 모 중 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등 국적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단, 기본증명서 상 이전 국적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제적등본 제출

9. 연암장학회

1. 사업 목적

- ☐ 사회적 배려계층 대학생 대상 생활비 장학금 지원으로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

2. 사업 내용

- ☐ 지원규모: 30백만 원(150만 원 × 20명 × 1개 학기)
-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 전공대, 대학원대, 원격대학(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등),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 신입생·편입생 제외 / 기부장학금 신청 시작일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1개 학기 이상인 자
- ☐ 신청자격: 학자금 지원구간 5구간 이하 대학생
-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 지원내용: 학기당 15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 지원인원: 20명
 -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대학*: 10명, 이외 지역 대학: 10명
 - * 지역 구분: 학과가 소속된 캠퍼스 소재지 기준 적용
 - ※ 강원특별자치도 지역 선발 대상자가 10명에 미달하는 경우, 이외 지역에서 추가 선발
- ☐ 지원기간: 1개 학기('26년 2학기)
- ☐ 평가기준: 가계소득(30점) + 성적(70점) + 가산점(5점)*
 - * 가산점 대상(5점 부여, 항목 간 중복 부여 불가)
 - 사회적 배려계층: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학생가장,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 포함), 한부모 가정의 자녀, 다문화 가정 대학생
 - 동점자 처리 기준: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 성적 상위자(백분위 점수) > 직전학기 이수학점 높은 자 > 연소자
- ☐ 제출서류: 사회적 배려계층 확인 서류(택1 선택 제출)
 - ※ 장학금 신청자와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자의 가족관계는 '26-2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함(대상자가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 증빙서류 미제출 및 잘못된 서류를 제출할 경우 심사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장애인: 장애인증명서(또는 장애인등록증)
 - ※ 장애인 인정 범위: 장학금 신청자 본인

○ 북한이탈주민(북향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북한이탈주민 인정 범위: 장학금 신청자 본인 또는 자녀

○ 학생가장: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의 사망으로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만 34세 이하* 대학생(기혼자 제외)

* 만 나이 기준은 신청 시작일 기준으로 함

○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 포함)

구분		증빙서류	발급처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 5년 경과 청년 포함)		보호종료확인서	(‘20.9.30. 이전 보호종료)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20.10.1. 이후 보호종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퇴소확인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필수)	아동복지시설
보호연장 아동	아동복지시설*	입소사실확인서 또는 재원증명서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시·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추가 제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 증빙서류 상 보호기관 유형이 ‘아동복지시설’로 명시되어 있지 않을 시 제출	

* 「아동복지법」 상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만 해당 (일시보호시설, 청소년쉼터, 부모동반시설 등은 제외)

※ 당해 학기 통합신청으로 자립준비청년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관련 서류 제출 생략 가능

○ 한부모 가정의 자녀*: 한부모가족 증명서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 가정의 자녀(신청자 본인이 보호 대상 자녀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산점 인정)

※ 신청자 본인의 연령 초과 등으로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위 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가산점 부여 불가

○ 다문화 가정

※ 외국인 부 또는 모에서 태어난 자녀(기혼자 제외)

- 한국 국적 취득 전: (부 또는 모)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 한국 국적 취득 후: (부 또는 모 중 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등 국적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단, 기본증명서 상 이전 국적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제적등본 제출

10. 정인욱학술장학재단(대학생)

1. 사업 목적

- ☐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 포함) 대학생 대상 생활비 장학금 지원으로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

2. 사업 내용

- ☐ 지원규모: 25백만 원(250만 원 × 10명 × 1개 학기)
-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 전공대, 대학원대, 원격대학(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등),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 신입생·편입생 제외 / 기부장학금 신청 시작일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1개 학기 이상인 자
- ☐ 신청자격*: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 포함)이며 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이하 대학생

* 일시보호시설 및 청소년쉼터, 부모동반시설 등은 해당하지 않음

-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 지원인원: 10명
- ☐ 지원내용: 학기당 25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 지원기간: 1개 학기('26년 2학기)
- ☐ 평가기준

○ (1차) 가계소득(60점) + 성적(40점), 2배수 선발

※ 1차 심사 대상 인원(신청자격 및 성적기준 해당자)이 1차 선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심사 생략 가능

○ (2차) 자기소개서(100점)

※ 자기소개서 평가 심사위원(2인): 기부자 2인

○ 동점자 처리 기준: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 성적 상위자(백분위 점수) > 연소자

※ 동점자 처리 기준은 1차, 2차 심사에 모두 적용

□ 제출서류: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 포함) 증빙서류(택1 필수 제출)

구분		증빙서류	발급처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 5년 경과 청년 포함)		보호종료 확인서	('20.9.30. 이전 보호종료)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20.10.1. 이후 보호종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퇴소확인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필수)	아동복지시설
보호연장 아동	아동복지시설*	입소사실 확인서 또는 재원증명서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시·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추가 제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 증빙서류 상 보호기관 유형이 '아동복지시설'로 명시되어 있지 않을 시 제출	

* 「아동복지법」 상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만 해당
(일시보호시설, 청소년쉼터, 부모동반시설 등은 제외)

※ 당해학기 통합신청으로 자립준비청년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관련 서류 제출 생략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및 잘못된 서류를 제출할 경우 심사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기타사항: 선발된 장학생은 '27년 1학기 푸른등대 정인욱학술장학재단(대학원) 기부장학금 선발 시 가산점 부여

※ '26년 1학기 기준: 푸른등대 정인욱학술장학재단(대학원) 기부장학금은 1인당 1,000만 원 지원하며, 푸른등대 정인욱학술장학재단(대학원 및 대학생 유형) 기부장학생(기수혜자) 대상 1차 평가 가산점 5점 부여

※ 단, '27-1학기 푸른등대 정인욱학술장학재단 기부장학금 사업은 기부자 사정 등에 따라 취소될 수 있음

붙임

자기소개서

○ **평가기준**

항목	진솔성	논리성	성실성	성장 가능성	목적 부합성	합계
배점	20	20	20	20	20	100
점수						

○ **채점기준**

채점기준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점수	20~18	17~15	14~12	11~9	8~5

○ **자기소개서 작성 항목**

1. 간단한 자기소개와 자신만의 장점과 역량 또는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고 싶은 자신만의 특별한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작성해주세요. (공백 포함 500자 이내)
2. 성장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과 어떻게 극복해 왔는지, 자신의 가치관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경험 중심으로 작성해주세요. (공백 포함 500자 이내)
3. ‘푸른등대 정인옥학술장학재단 기부장학금’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며, 장학금이 본인의 학업 및 자립 계획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작성해주세요. (공백 포함 500자 이내)
4. 본인의 학업 계획 및 진로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여부와 자신의 인생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작성해주세요. (공백 포함 1,000자 이내)
5. 본인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공동체에 어떤 기여를 하고 싶으며, 관련하여 어떤 노력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작성해주세요. (공백 포함 500자 이내)

11. 기움증권

1. 사업 목적

- ☐ 사회적 배려계층 대학생 대상 생활비 장학금 지원으로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

2. 사업 내용

- ☐ 지원규모: 102백만 원(200만 원 × 51명 × 1개 학기)
-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 전공대, 대학원대, 원격대학(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등),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 신입생·편입생 제외 / 기부장학금 신청 시작일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1개 학기 이상인 자
- ☐ 신청자격: 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이하 대학생
-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 지원내용: 학기당 20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 지원인원: 51명
- ☐ 지원기간: 1개 학기('26년 2학기)
- ☐ 평가기준: 가계소득(50점) + 성적(50점) + 가산점(5점)*
 - * 가산점 대상(5점 부여, 항목 간 중복 부여 불가)
 - 사회적 배려계층: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학생가장,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 포함), 한부모 가정의 자녀, 다문화 가정 대학생
- ☐ 동점자 처리 기준: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 포함) >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 성적 상위자(백분위 점수) > 연소자
- ☐ 제출서류: 사회적 배려계층 확인 서류(택1 선택 제출)
 - ※ 장학금 신청자와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자의 가족관계는 '26-2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함(대상자가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 증빙서류 미제출 및 잘못된 서류를 제출할 경우 심사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장애인: 장애인증명서(또는 장애인등록증)
 - ※ 장애인 인정 범위: 장학금 신청자 본인
 - 북한이탈주민(북향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 북한이탈주민 인정 범위: 장학금 신청자 본인 또는 자녀

○ 학생가장: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의 사망으로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만 34세 이하 대학생(기혼자 제외)

* 만 나이 기준은 신청 시작일 기준으로 함

○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 포함)

구분		증빙서류	발급처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 5년 경과 청년 포함)		보호종료확인서	(‘20.9.30. 이전 보호종료)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20.10.1. 이후 보호종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퇴소확인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필수)	아동복지시설
보호연장 아동	아동복지시설*	입소사실확인서 또는 재원증명서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시·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추가 제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 증빙서류 상 보호기관 유형이 ‘아동복지시설’로 명시되어 있지 않을 시 제출	

* 「아동복지법」상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만 해당 (일시보호시설, 청소년쉼터, 부모동반시설 등은 제외)

※ 당해학기 통합신청으로 자립준비청년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관련 서류 제출 생략 가능

○ 한부모 가정의 자녀*: 한부모가족 증명서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 가정의 자녀(신청자 본인이 보호 대상 자녀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산점 인정)

※ 신청자 본인의 연령 초과 등으로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위 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가산점 부여 불가

○ 다문화 가정

※ 외국인 부 또는 모에서 태어난 자녀(기혼자 제외)

- 한국 국적 취득 전: (부 또는 모)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 한국 국적 취득 후: (부 또는 모 중 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등 국적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단, 기본증명서 상 이전 국적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제적등본 제출

12. 포스코 희망이음

1. 사업 목적

- ☐ 산업재해 피해 가정 대학생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교육비 및 생활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
- ☐ 사회적 배려와 취약계층 안전망이 필요한 인재들이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산재가족돌봄재단 ‘포스코 희망이음’ 철학 실현

2. 사업 내용

- ☐ 지원규모: 768백만 원(400만 원 × 32명 × 최대 6학기)
-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 전공대, 대학원대, 원격대학(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등),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 신입생·편입생 제외 / 기부장학금 신청 시작일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2개 학기 이상인 자
- ☐ 신청자격: 아래 ① ~ ③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 ① 학자금 지원구간 7구간 이하
 - ② 산업재해* 근로자 본인 또는 그 자녀
 - * 산업재해자 범위: 산업재해 ① 사망자, ② 장해자, ③ 피해자 중 28일 이상 입원자 (단, 업무 상 질병 요양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통상 출퇴근 재해는 제외)
 - ※ 장학금 신청자와 산업재해자의 가족관계는 '26-2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심사함(단, 근로자는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사망자 제외)
 - ③ 인재육성 프로그램 참가 가능한 자(1회 진행)
 - ※ 인재육성 프로그램 총 예산: 50백만 원
 - ※ 프로그램 내용: 자기개발 교육, 취업 특강, 심리 치료 등으로 구성(기부자 협의 후 진행)
 - ※ 프로그램 일정: '27년 1월 또는 2월 중 개최 예정
-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 지원인원: 32명
- ☐ 지원내용: 학기당 40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지원기간: 선발 후 4년 이내*, 최대 6학기(회) 지원

* 지원기간은 장학생 선발 해당 학기 포함 총 4년 이내

- (예시1) 휴학없이 학업 유지: '26-2학기 최초 선발 => '29-1학기 최종 지원 (총 6회)
- (예시2) 휴학 1회(1개 학기): '26-2학기 최초 선발 => '29-2학기 최종 지원 (총 6회)
- (예시3) 휴학 2회(2개 학기) 이상: '26-2학기 최초 선발 => '30-1학기 최종 지원 (총 6회)

※ 장학생 선발 후 휴학 시(군휴학 포함) 장학생 자격 유지

※ 장학생 선발 후 졸업·편입·자퇴 시 장학생 자격 상실(탈락)

□ 평가기준

- (1차) 가계소득(40점) + 성적(30점) + 산업재해 장해등급 및 경과 기간¹⁾
 (최대 10점) + 산업군 및 사업장 규모²⁾(최대 20점), 2배수 선발

1) [산업재해 장해등급 및 경과 기간별 차등 배점(최대 10점)]

구분(재해 경과기간)*	사망	중증 장해 (1~3급)	보통 장해 (4~7급)	경증 장해 (8~14급)
10년 초과	10점	10점	5점	1점
5년 초과~10년 이하		8점	4점	
3년 초과~5년 이하		7점	3점	
3년 이하		6점	2점	

* 재해 경과기간 기준일자: 2026년 2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 시작일 전일

2) [산업군 및 사업장 규모별 차등 배점(최대 20점)]

구분(상시 근로자 수)	제조·건설 분야	기타 일반 산업 분야
50인 미만(영세 및 소기업)	20점	5점
50인 이상 ~ 300인 미만(중기업)	5점	3점

※ 신청자가 제출한 '보험급여 지급확인원'의 사업장 관리번호를 기준으로 기부자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업종 및 상시 근로자 수(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를 확인 후 적용하며, 확인이 불가능한 사업장은 가산점 적용 제외

○ (2차) 자기소개서(100점)

※ 자기소개서 평가 심사위원(2인): 기부자 2인

- 동점자 처리 기준: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 성적 상위자(백분위 점수) > 직전 학기 이수학점 높은 자 > 연소자

※ 동점자 처리 기준은 1차, 2차 심사에 모두 적용

□ 계속장학생 선발 기준

- (성적 및 학점)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 성적 및 학점 미달 시 해당 학기 장학금 미지급(단, 계속장학생 자격은 유지)
 - ※ 졸업학기에는 최소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인재육성 프로그램) 포스코 희망이음 인재육성 프로그램* 참여
 - * 미참여 시 계속장학생 영구 탈락
 - ※ 질병·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불참 시 관련 증빙자료 제출 필수(참여 인정 여부는 기부자 협의 후 결정)
- (희망이음 활동 보고서) 자기개발 및 학업에 대한 계획서 제출
 - ※ 상세 내용은 [붙임2] 희망이음 활동 보고서 참조(매 학기 계속장학생 대상자는 활동 보고서 제출, 미제출 시 계속장학생 탈락)

□ 제출 서류

- ※ 장학금 신청자와 산업재해자의 가족관계는 '26-2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심사함(단, 근로자는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사망자 제외)
- ※ 증빙서류 미제출 및 잘못된 서류를 제출할 경우 심사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공통] 보험급여 지급확인원(보험사 제출용)
 -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에서 “보험사 제출용” 서류로 발급, 다른 증빙 서류로 대체 불가
- [산업재해 사망자의 자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붙임1

자기소개서

○ 평가기준

항목	진솔성	책임감	성실성	성장 가능성	목적 부합성	합계
배점	20	20	20	20	20	100
점수						

○ 채점기준

채점기준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점수	20~18	17~15	14~12	11~9	8~5

○ 자기소개서 작성 항목

1. [자기소개 및 가치관] (공백 포함 1,000자 이내)
가치관을 바탕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가정의 변화를 극복해 온 과정
2. [학업 의지 및 진로 목표] (공백 포함 500자 이내)
학업을 완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졸업 후 희망 진로 또는 달성 목표
3. [사회 기여] (공백 포함 500자 이내) ※ 봉사활동 실적 포함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본인의 노력과 계획
4. [장학금 수혜의 적합성] (공백 포함 500자 이내)
본 장학금이 본인에게 갖는 의미와 수혜자로 적합한 이유
5. [미래 비전 및 태도] (공백 포함 500자 이내)
본인이 꿈꾸는 삶의 모습과 이를 위해 현재 실천 중인 노력

붙임2

포스코 희망이음 활동 보고서

포스코 희망이음 활동 보고서 양식

<00대학교 00전공 0학년 홍길동>

○ 희망이음 중간 보고서 작성 항목(예시)

1. 2027년 꿈을 달성하기 위한 학업 계획서 (공백 포함 500자 내외)
2. 2026년 2학기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 내용(2026. 9 ~ 2027. 2월) (공백 포함 500자 내외)
※ 2026년 2학기 장학금 사용 내역 포함
3. 2027년 1학기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 내용(2027. 3 ~ 7월) (공백 포함 500자 내외)
※ 2027년 1학기 장학금 사용 계획 포함
4. 꿈 이룸을 위한 각오 및 인생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공백 포함 500자 내외)

※ 미제출 시 '27-1학기 계속장학생 선발에서 탈락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제출

※ 제출기한: '27. 3. 10.까지

※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별도 안내 예정)

※ 매 학기 계속장학생 대상자는 활동 보고서 제출, 미제출 시 계속장학생 탈락

13. 한국가스공사LnG(유형1)

1. 사업 목적

- ☐ 사회적 배려계층 대학생 대상 생활비 장학금 지원으로 미래 인재 육성에 기여

2. 사업 내용

- ☐ 지원규모: 210백만 원(200만 원 × 105명 × 1개 학기)

-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전공대, 대학원대, 원격대학(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등),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신입생·편입생 제외 / 기부장학금 신청 시작일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1개 학기 이상인 자

※ 푸른등대 한국가스공사 기부장학금* 기수혜자는 선발 제외

*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LnG(유형1·2·3)

- ☐ 신청자격

- 전국 소재* 대학교 재학생(단, 대구 소재 대학교 재학생은 신청 불가) 중 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이하 또는 사회적 배려계층** 대학생

* 지역 구분: 학과가 소속된 캠퍼스 소재지 기준 적용

** 사회적 배려계층: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학생가장,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 포함),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대학생

-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 지원인원: 105명

- ☐ 지원내용: 학기당 20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붙임. 푸른등대 한국가스공사 기부장학금 지역별 선발 인원」에 따라 선발

- ☐ 지원기간: 1개 학기('26년 2학기)

- ☐ 평가기준: 가계소득(70점) + 성적(30점) + 가산점*(5점)

* 가산점 대상(5점 부여, 항목 간 중복 부여 불가)

- 사회적 배려계층: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학생가장,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 포함), 한부모 가정의 자녀, 다문화 가정 대학생

- ☐ 동점자 처리 기준: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 성적 상위자(백분위 점수) > 연소자

□ 제출서류: 사회적 배려계층 확인 서류(택1 선택 제출)

※ 장학금 신청자와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자의 가족관계는 '26-2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함(대상자가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증빙서류 미제출 및 잘못된 서류를 제출할 경우 심사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장애인: 장애인증명서(또는 장애인등록증)

※ 장애인 인정 범위: 장학금 신청자 본인

○ 북한이탈주민(북향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북한이탈주민 인정 범위: 장학금 신청자 본인 또는 자녀

○ 학생가장: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의 사망으로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만 34세 이하 대학생(기혼자 제외)

* 만 나이 기준은 신청 시작일 기준으로 함

○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 포함)

구분		증빙서류	발급처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 5년 경과 청년 포함)		보호종료확인서	(20.9.30. 이전 보호종료)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20.10.1. 이후 보호종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퇴소확인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필수)	아동복지시설
보호연장 아동	아동복지시설*	입소사실확인서 또는 재원증명서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시·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추가 제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 증빙서류 상 보호기관 유형이 '아동복지시설'로 명시되어 있지 않을 시 제출	

* 「아동복지법」상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만 해당 (일시보호시설, 청소년쉼터, 부모동반시설 등은 제외)

※ 당해학기 통합신청으로 자립준비청년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관련 서류 제출 생략 가능

○ 한부모 가정의 자녀*: 한부모가족 증명서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 가정의 자녀(신청자 본인이 보호 대상 자녀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산점 인정)

※ 신청자 본인의 연령 초과 등으로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위 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가산점 부여 불가

○ 다문화 가정

※ 외국인 부 또는 모에서 태어난 자녀(기혼자 제외)

- 한국 국적 취득 전: (부 또는 모)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 한국 국적 취득 후: (부 또는 모 중 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등 국적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단, 기본증명서 상 이전 국적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제적등본 제출

붙임
푸른등대 한국가스공사(LNG[유형1]) 기부장학금 지역별 선발 인원

권역	장학생 선발 기준 지역 (학과가 소속된 캠퍼스 소재지 기준)	선발 인원(명)
경북·강원권	경상북도, 강원특별자치도	20
수도권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25
충청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도	20
호남·제주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20
동남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20
합 계		105

※ 권역별 선발 인원이 미충족(미달)될 경우 기부자와 협의하여 미충족 인원은 전체 신청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14. 한국가스공사LnG(유형2)

1. 사업 목적

- ☐ 사회적 배려계층 대학생 대상 생활비 장학금 지원으로 미래 인재 육성에 기여

2. 사업 내용

- ☐ 지원규모: 50백만 원(200만 원 × 25명 × 1개 학기)

-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전공대, 대학원대, 원격대학(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등),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신입생·편입생 제외 / 기부장학금 신청 시작일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1개 학기 이상인 자

※ 푸른등대 한국가스공사 기부장학금* 기수혜자는 선발 제외

*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LnG(유형1·2·3)

- ☐ 신청자격

- 대구광역시 소재* 대학교 재학생 중 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이하 또는 사회적 배려계층** 대학생

* 지역 구분: 학과가 소속된 캠퍼스 소재지 기준 적용

** 사회적 배려계층: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학생가장,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 포함), 한부모 가정의 자녀, 다문화 가정 대학생

-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 지원인원: 25명

- ☐ 지원내용: 학기당 20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 지원기간: 1개 학기('26년 2학기)

- ☐ 평가기준: 가계소득(70점) + 성적(30점) + 가산점*(5점)

* 가산점 대상(5점 부여, 항목 간 중복 부여 불가)

- 사회적 배려계층: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학생가장,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 포함), 한부모 가정의 자녀, 다문화 가정 대학생

- ☐ 동점자 처리 기준: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 성적 상위자(백분위 점수) > 연소자

- ☐ 제출서류: 사회적 배려계층 확인 서류(택1 선택 제출)

※ 장학금 신청자와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자의 가족관계는 '26-2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함(대상자가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증빙서류 미제출 및 잘못된 서류를 제출할 경우 심사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장애인: 장애인증명서(또는 장애인등록증)

※ 장애인 인정 범위: 장학금 신청자 본인

○ 북한이탈주민(북향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북한이탈주민 인정 범위: 장학금 신청자 본인 또는 자녀

○ 학생가장: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의 사망으로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만 34세 이하* 대학생(기혼자 제외)

* 만 나이 기준은 신청 시작일 기준으로 함

○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 포함)

구분		증빙서류	발급처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 5년 경과 청년 포함)		보호종료확인서	(‘20.9.30. 이전 보호종료)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20.10.1. 이후 보호종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퇴소확인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필수)	아동복지시설
보호연장 아동	아동복지시설*	입소사실확인서 또는 재원증명서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시·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추가 제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 증빙서류 상 보호기관 유형이 ‘아동복지시설’로 명시되어 있지 않을 시 제출	

* 「아동복지법」상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만 해당 (일시보호시설, 청소년쉼터, 부모동반시설 등은 제외)

※ 당해 학기 통합신청으로 자립준비청년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관련 서류 제출 생략 가능

○ 한부모 가정의 자녀*: 한부모가족 증명서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 가정의 자녀(신청자 본인이 보호 대상 자녀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산점 인정)

※ 신청자 본인의 연령 초과 등으로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위 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가산점 부여 불가

○ 다문화 가정

※ 외국인 부 또는 모에서 태어난 자녀(기혼자 제외)

- 한국 국적 취득 전: (부 또는 모)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 한국 국적 취득 후: (부 또는 모 중 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등 국적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단, 기본증명서 상 이전 국적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제적등본 제출

15. 한국가스공사LnG(유형3)

1. 사업 목적

- 지역아동센터 봉사활동 참여 대학생 대상 생활비 장학금 지원으로 봉사를 통한 지역사회 기여를 격려하고 건강한 미래 인재 육성에 기여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60백만 원(200만 원 × 30명 × 1개 학기)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 전공대, 대학원대, 원격대학(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등),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 신입생·편입생 제외 / 기부장학금 신청 시작일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1개 학기 이상인 자
 - ※ 푸른등대 한국가스공사 기부장학금* 기수혜자는 선발 제외
 - *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LnG(유형1·2·3)
 - ※ 심사 기준일 기준 '26년 2학기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된 재심사 기준일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되지 않은 경우 10구간으로 간주)
- 신청자격: 지역아동센터 봉사활동* 참여 대학생
- * 'VMS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 또는 '1365 자원봉사포털' 발급 증빙서류만 인정 (타 증빙서류 불가)
 - ※ 봉사활동 실적 인정 기간: '26년 1월 1일 ~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 시작일 전일
 - ※ 봉사활동 증명서에 '지역아동' 단어가 포함된 기관에서 봉사한 경우만 인정 (예시: ○○지역아동센터)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지원인원: 30명
- 지원내용: 학기당 20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지원기간: 1개 학기('26년 2학기)
- 평가기준: 가계소득(70점) + 성적(30점) + 가산점*(5점)

구분	10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	20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	30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40시간 이상 ~ 50시간 미만	50시간 이상
가산점	1점	2점	3점	4점	5점

- * 봉사활동 증명서에 '지역아동' 단어가 포함된 기관에서 봉사한 경우만 인정 (예시: ○○지역아동센터)
- ※ 봉사활동 실적 인정 기간: '26년 1월 1일 ~ 기부장학금 신청 시작일 전일

☐ 동점자 처리 기준: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 성적 상위자(백분위 점수) > 연소자

☐ 제출 서류: **지역아동센터 봉사활동*** 증명서

○ ‘사회복지 자원봉사 실적 인증서(VMS)’ 또는 ‘자원봉사활동 확인서(1365)’

* ‘VMS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 또는 ‘1365 자원봉사포털’ 발급 증빙서류만 인정
(타 증빙서류 불가)

※ 증빙서류 미제출 및 잘못된 서류를 제출할 경우 심사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16. 한국교직원공제회

1. 사업 목적

- ☐ 사범대, 교육대, 교원대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대학생의 생활비 장학금 지원으로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

2. 사업 내용

- ☐ 지원규모: 306백만 원(200만 원 × 153명 × 1개 학기)
-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전국 사범(교육, 교원)대학* 재학생
 - * 적용 대상 및 여부는 기부자와 협의하여 진행
 - ※ 전공대, 대학원대, 원격대학(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등),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 신입생·편입생 제외 / 기부장학금 신청 시작일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1개 학기 이상인 자
- ☐ 신청자격: 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이하인 사범대, 교육대, 교원대 재학생
 - ※ 단, 일반대학 교직이수과정 재학생은 제외함
 - ※ 푸른등대 한국교직원공제회 기부장학금 기수혜자는 선발 제외
-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 지원내용: 학기당 20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 지원인원: 153명
- ☐ 지원기간: 1개 학기('26년 2학기)
- ☐ 평가기준: 가계소득(60점) + 성적(40점)
 - 동점자 처리 기준: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 성적 상위자(백분위 점수) > 연소자

17. 한국토지주택공사

1. 사업 목적

- ☐ 임대주택 저소득층 대학생 대상 생활비 장학금 지원으로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

2. 사업 내용

- ☐ 지원규모: 150백만 원(200만 원 × 75명 × 1개 학기)
-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 전공대, 대학원대, 원격대학(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등),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 신입생·편입생 제외 / 기부장학금 신청 시작일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1개 학기 이상인 자
- ☐ 신청자격: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거주* 대학생 중 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이하인 자

* 1) LH 임대주택의 계약자가 장학금 신청자 본인인 경우

2) LH 임대주택의 계약자가 장학금 신청자 본인이 아닌 경우

① (미혼자) LH 임대주택의 계약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 인정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조손가정의 경우 계약자가 조부 또는 조모인 경우도 인정하며, 조손가정 여부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상 세대주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함

② (기혼자) LH 임대주택의 계약자가 배우자인 경우 인정

※ LH 임대주택의 계약자가 장학금 신청자 본인이 아닌 경우, 계약자가 LH 임대주택에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거주 중이어야 함

※ LH 임대주택 거주 여부(계약자명, 계약자 주민등록번호, 계약자 휴대폰 번호, 신청자 거주지 주소의 LH 임대주택 해당 여부 등)는 LH에서 최종 확인

※ LH 임대주택의 계약자가 장학금 신청자 본인이 아닌 경우, 장학금 신청자와 계약자의 가족관계는 '26-2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함(계약자가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조손 가정의 경우 제외)

※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기간 내 LH 임대주택에 거주 중이어야 하며(신청 시작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서류로 확인될 경우 거주 중으로 간주), 신청기간 내 LH 임대주택 계약기간이 포함되어야 함

※ 푸른등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부장학금 기수혜자는 선발 제외

-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 지원인원: 75명

- ☐ 지원내용: 학기당 20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 지원기간: 1개 학기('26년 2학기)
- ☐ 평가기준: 가계소득(60점) + 성적(40점)
- ☐ 동점자 처리 기준: 계약자가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 포함) 본인인 경우
>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 성적 상위자(백분위 점수) > 연소자
- ☐ 제출서류

※ 증빙서류 미제출 및 잘못된 서류를 제출할 경우 심사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필수]** 본인 명의 주민등록등본*, 계약자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제공 및 조회 동의서(붙임)**, 계약자 신분증 사본

* 단,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및 연계 동의자는 서류(주민등록등본) 제출 불필요
(공공 마이데이터 동의 절차 참조)

** 계약자 명의의 동의서 제출 필요(단, 계약자가 장학금 신청자 본인인 경우 동의서
및 신분증 사본 제출 불필요)

- **[선택]** 조손 가정*: 한부모가족 증명서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 가정(조손 가정인 경우)

- **[선택]**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 포함) 증빙서류

구분		증빙서류	발급처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 5년 경과 청년 포함)		보호종료확인서	(’20.9.30. 이전 보호종료)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20.10.1. 이후 보호종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퇴소확인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필수)	아동복지시설
보호연장 아동	아동복지시설*	입소사실확인서 또는 재원증명서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시·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추가 제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 증빙서류 상 보호기관 유형이 ‘아동복지시설’로 명시되어 있지 않을 시 제출	

* 「아동복지법」 상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만 해당
(일시보호시설, 청소년쉼터, 부모동반시설 등은 제외)

※ 당해 학기 통합신청으로 자립준비청년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관련 서류 제출 생략 가능

붙임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양식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심사를 위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한국토지주택공사용)**

한국장학재단 귀중

본인은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자의 가구원으로서 한국장학재단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사업 등 아래 내용과 같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하는데 동의합니다.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사업 운영 및 사후관리 업무 수행
수집·이용 항목	■ 성명, 연락처, 주소지, 신청자와의 관계
보유·이용 기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보존·폐기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제공·조회 목적	■ 주소지의 계약자와 신청 정보 상 일치 여부 및 임대주택 해당 여부 확인
제공·조회 항목	■ 성명, 연락처, 주소지, 신청자와의 관계
제공·조회 기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보존·폐기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기타 고지 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사업 운영 및 사후관리 업무 수행
개인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 첨부 : 본인 신분증 사본

위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 거부 시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선정·지급 등 수집·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항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18. iM사회공헌재단

1. 사업 목적

- ☐ 대구·경북 지역 저소득층 대학생 대상 생활비 장학금 지원으로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

2. 사업 내용

- ☐ 지원규모: 50백만 원(200만 원 × 25명 × 1개 학기)
-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 전공대, 대학원대, 원격대학(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등),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 신입생·편입생 제외 / 기부장학금 신청 시작일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1개 학기 이상인 자
- ☐ 신청자격: 대구경북 소재* 대학교 재학생 중 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이하인 자
 - * 지역 구분: 학과가 소속된 캠퍼스 소재지 기준 적용
 - ※ 푸른등대 iM(구, DGB)사회공헌재단 기부장학금 기수혜자는 선발 제외
-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 지원내용: 학기당 20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 지원인원: 25명
- ☐ 지원기간: 1개 학기('26년 2학기)
- ☐ 평가기준: 가계소득(50점) + 성적(50점) + 가산점(5점)*
 - * 가산점 대상(5점 부여, 항목 간 중복 부여 불가)
 - 사회적 배려계층: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학생가장,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 포함), 다문화 가정
- ☐ 동점자 처리 기준: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 포함) >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 성적 상위자(백분위 점수) > 직전 학기 이수학점 높은 자 > 연소자
- ☐ 제출서류: 사회적 배려계층 확인 서류(택1 선택 제출)
 - ※ 장학금 신청자와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자의 가족관계는 '26-2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함(대상자가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 증빙서류 미제출 및 잘못된 서류를 제출할 경우 심사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장애인:** 장애인증명서(또는 장애인등록증)

※ 장애인 인정 범위: 장학금 신청자 본인

○ **북한이탈주민(북향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북한이탈주민 인정 범위: 장학금 신청자 본인 또는 자녀

○ **학생가장:**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의 사망으로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만 34세 이하 대학생(기혼자 제외)

* 만 나이 기준은 신청 시작일 기준으로 함

○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 포함)**

구분		증빙서류	발급처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 5년 경과 청년 포함)		보호종료확인서	(‘20.9.30. 이전 보호종료)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20.10.1. 이후 보호종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퇴소확인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필수)	아동복지시설
보호연장 아동	아동복지시설*	입소사실확인서 또는 재원증명서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시·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추가 제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 증빙서류 상 보호기관 유형이 ‘아동복지시설’로 명시되어 있지 않을 시 제출	

* 「아동복지법」 상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만 해당
(일시보호시설, 청소년쉼터, 부모동반시설 등은 제외)

※ 당해학기 통합신청으로 자립준비청년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관련 서류 제출 생략 가능

○ **다문화 가정**

※ 외국인 부 또는 모에서 태어난 자녀(기혼자 제외)

- 한국 국적 취득 전: (부 또는 모)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 한국 국적 취득 후: (부 또는 모 중 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등 국적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단, 기본증명서 상 이전 국적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제적등본 제출

□ 기타사항(장학생 의무사항)

○ iM사회공헌재단 주관 자체 금융교육 프로그램 이수

- 최종 선발된 장학생은 장학 혜택의 일환으로 iM사회공헌재단에서 주관하는 온라인 금융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 본 교육은 장학생의 필수 의무사항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이수할 경우 장학금 환수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음

※ 이수 기한 등 상세사항은 iM사회공헌재단에서 선발된 장학생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

19. JDC 환경장학금

1. 사업 목적

- ☐ 환경미화원(공무직) 자녀(대학생)에게 JDC 환경장학금을 지원하여
학업 장려 및 안정적인 학습 기회 보장에 기여

2. 사업 내용

- ☐ 지원규모: 46백만 원(200만 원 × 23명 × 1개 학기)
-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 전공대, 대학원대, 원격대학(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등),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 신입생·편입생 제외 / 기부장학금 신청 시작일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1개 학기 이상인 자
 - ※ 심사 기준일 기준 '26년 2학기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된 자(심사 기준일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되지 않은 경우 10구간으로 간주)
- ☐ 신청자격: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미화원(공무직)의 대학생 자녀
 - ※ 환경미화원 및 청소차 운전원 포함
 - ※ 장학금 신청자와 환경미화원의 가족관계는 '26-2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함(환경미화원은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 지원내용: 학기당 20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 지원인원: 23명
- ☐ 지원기간: 1개 학기('26년 2학기)
- ☐ 평가기준: 가계소득(60점) + 성적(40점)
 - 동점자 처리 기준: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 고학년 > 다자녀 가정 > 성적 상위자(백분위 점수) > 연소자
- ☐ 제출서류: 아래 ① ~ ③ 서류 모두 제출
 - ① [붙임1] 푸른등대 JDC 환경장학금 자격 확인서(장학금 신청자 서명본)
 - ② [붙임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환경미화원 서명본)
 - ③ 환경미화원 신분증 사본
 - ※ 증빙서류 미제출 및 잘못된 서류를 제출할 경우 심사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붙임1

푸른등대 JDC 환경장학금 자격 확인서

푸른등대 JDC 환경장학금 자격 확인서

장학금 신청자 인 적 사 항	성 명		주민번호(앞 7자리)	
	연 락 처		종사자와 관계	
	주 소	서울특별시 XX구 XX로 XXXX		
	학 교 명		전 공	
	학 번		이 메 일	
종사자 인 적 사 항	성 명		주민번호(앞 7자리)	
	연 락 처		신청자와 관계	

상기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미화원 또는 청소차 운전원의 자녀이며,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민·형사 상 책임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장학금 신청자명 : 김 초 록 (서명 또는 인)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붙임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양식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심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JDC 환경장학금융)

한국장학재단 귀중

본인은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자의 가구원으로서 한국장학재단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사업 등 아래 내용과 같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하는데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사업 운영 및 사후관리 업무 수행
수집·이용 항목	■ 성명, 재직중인 직장명(소속)
보유·이용 기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보존·폐기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기관	■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제공·조회 목적	■ 환경미화원 종사 여부 확인
제공·조회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재직중인 직장명(소속)
제공·조회 기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보존·폐기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기타 고지 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사업 운영 및 사후관리 업무 수행
개인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신분증 사본
수집 근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 첨부 : 본인 신분증 사본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 거부 시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선정·지급 등 수집·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항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20. KRX국민행복재단

1. 사업 목적

- ☐ 부산지역 저소득층 및 사회적 배려계층 대학생 대상 생활비 장학금 지원으로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

2. 사업 내용

- ☐ 지원규모: 320백만 원(2백만 원 × 40명 × 최대 4학기)
-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부산지역 소재 4년제 대학교 2학년* 재학생
 - * 학사원장 상 2학년인 경우
 - ※ 전문대, 전공대, 대학원대, 원격대학(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등),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 신입생·편입생 제외 / 기부장학금 신청 시작일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2개 학기 이상인 자
- ☐ 신청자격: 부산지역 소재* 4년제 대학교 2학년 재학생 중 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이하인 자

* 지역 구분: 본교 소재지가 부산인 4년제 대학교(대학교 목록은 [붙임1] 신청 가능 대학 참조)

-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 지원인원: 40명
- ☐ 지원내용: 학기당 20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 지원기간: 선발 후 3년 이내*, 최대 4학기(회) 지원

* 지원기간은 장학생 선발 해당 학기 포함 총 3년 이내

- (예시1) 휴학없이 학업 유지: '26-2학기 최초 선발 => '28-1학기 최종 지원 (총 4회)
- (예시2) 휴학 1회(1개 학기): '26-2학기 최초 선발 => '28-2학기 최종 지원 (총 4회)
- (예시3) 휴학 2회(2개 학기) 이상: '26-2학기 최초 선발 => '29-1학기 최종 지원 (총 4회)

※ 장학생 선발 후 휴학 시(군휴학 포함) 장학생 자격 유지

※ 장학생 선발 후 졸업·편입·자퇴 시 장학생 자격 상실(탈락)

※ 장학생 선발 후 첫 학기('26년 2학기) 휴학 시 장학생 자격 상실(탈락) 및 해당 학기 장학금 환수

□ 평가기준

○ (1차) 가계소득(60점) + 성적(40점) + 가산점*(5점), 2배수 선발

* 가산점 대상(5점 부여, 항목 간 중복 부여 불가)

- 사회적 배려계층: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학생가장,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 포함),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대학생

- KRX DREAM 중·고등학생 장학생 출신 대학생

- 1차 평가 동점자 처리 기준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 성적 상위자(백분위 점수) > 직전 학기 이수학점 높은 자 > 연소자

○ (2차) 자기소개서(100점), 1.2배수 선발

※ 자기소개서 평가 심사위원(2인 또는 3인): 기부자 2인 또는 3인

- 2차 평가 동점자 처리 기준: 우선 순위 평가항목* 점수가 높은 자 > 연소자

* 우선 순위 평가항목: 1) 성장 가능성 > 2) 목적 부합성 > 3) 논리성 > 4) 성실성 > 5) 진솔성

○ (3차) 면접 평가*(100점)

※ 면접 평가 심사위원(3인): 기부자 1인, 기부자 추천 1인, 한국장학재단 1인

- 3차 평가 동점자 처리 기준: 우선 순위 평가항목* 점수가 높은 자 > 연소자

* 우선 순위 평가항목: 1) 성장 가능성 > 2) 적합성 > 3) 인성 평가 (상세 기준은 [붙임3] 3차 면접 평가 참고자료 참조)

□ 계속장학생 선발 기준: 아래 ① ~ ②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KRX 장학생 유지 요건(기부자 지정 요건)*을 충족한 자

* 세부 유지 요건: [붙임4] KRX 장학생 유지 요건 참조

※ 장학생 유지 요건 미달 시 해당 학기 장학금 미지급(단, 계속장학생 자격은 유지)

② (성적 및 학점)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성적 및 학점 기준 미달 시 해당 학기 장학금 미지급(단, 계속장학생 자격은 유지)

※ 졸업 학기에는 최소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제출서류: 사회적 배려계층 확인 서류 또는 KRX DREAM 중·고등학생 장학생 장학증서 (택1 선택 제출)

※ 장학금 신청자와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자의 가족관계는 '26-2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함(대상자가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증빙서류 미제출 및 잘못된 서류를 제출할 경우 심사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장애인**: 장애인증명서(또는 장애인등록증)
 - ※ 장애인 인정 범위: 장학금 신청자 본인
- **북한이탈주민(북향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 북한이탈주민 인정 범위: 장학금 신청자 본인 또는 자녀
- **학생가장**: 가족관계증명서
 - ※ 부모의 사망으로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만 34세 이하* 대학생(기혼자 제외)
 - * 만 나이 기준은 신청 시작일 기준으로 함
-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 포함)**

구분		증빙서류	발급처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 5년 경과 청년 포함)		보호종료확인서	(‘20.9.30. 이전 보호종료)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20.10.1. 이후 보호종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퇴소확인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필수)	아동복지시설
보호연장 아동	아동복지시설*	입소사실확인서 또는 재원증명서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시·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추가 제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 증빙서류 상 보호기관 유형이 ‘아동복지시설’로 명시되어 있지 않을 시 제출	

* 「아동복지법」 상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만 해당 (일시보호시설, 청소년쉼터, 부모동반시설 등은 제외)

※ 당해 학기 통합신청으로 자립준비청년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관련 서류 제출 생략 가능

○ **한부모 가정의 자녀***: 한부모가족 증명서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 가정의 자녀(신청자 본인이 보호 대상 자녀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산점 인정)

※ 신청자 본인의 연령 초과 등으로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위 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가산점 부여 불가

○ **다문화 가정**

※ 외국인 부 또는 모에서 태어난 자녀(기혼자 제외)

- 한국 국적 취득 전: (부 또는 모)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 한국 국적 취득 후: (부 또는 모 중 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등 국적 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단, 기본증명서 상 이전 국적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제적등본 제출

○ KRX DREAM 중·고등학생 장학생 출신: KRX DREAM 장학증서 사본

※ KRX DREAM 장학증서 사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분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이 어려운 경우 [붙임5] 장학생 확인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하여 기부자 확인 절차를 거쳐 인정 여부 판단 예정

□ 기타사항(장학생 혜택)

○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

- 정보 공유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네이버 카페) 제공

○ 인재육성 프로그램 제공

- 봉사활동, 리더십 교육, 진로·취업특강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 제공

○ KRX국민행복재단 프로그램 및 복지 혜택 우선 지원

- 대학생 봉사단 선발 시 가산점 부여
- 각종 프로그램 참여 및 문화 공연 초청 등 우선 제공

□ 기타사항(계속장학생 심사 관련 사항)

○ 계속장학생 자격 심사 및 결과 통보

- KRX 장학생 유지 요건에 대한 자격 심사는 KRX국민행복재단에서 직접 수행함

※ 장학생 증빙서류 제출기한(제출처: KRX국민행복재단): (1학기) 2월 중순, (2학기) 8월 중순

※ 봉사활동 증빙서류 제출은 KRX국민행복재단에서 별도 안내 예정

- 기부자는 당해 학기 계속장학금 지급 전 자격 심사를 완료하고, 최종 결과를 한국장학재단에 통보

※ 결과 통보기한: (1학기) 3월 초, (2학기) 9월 초

- 한국장학재단은 기부자로부터 통보받은 심사 결과(자격 충족 여부) 및 성적·이수학점 등 기준 충족 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장학금 지급

붙임1
신청 가능 대학(본교가 부산 소재인 4년제 대학교)

순번	대 학 명	대 학 주 소
1	경성대학교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309
2	고신대학교	부산광역시 영도구 와치로 194
3	국립부경대학교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45
4	국립한국해양대학교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727
5	동명대학교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428
6	동서대학교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로 47
7	동아대학교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550번길 37
8	동의대학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엄광로 176
9	부산가톨릭대학교	부산광역시 금정구 오륜대로 57
10	부산교육대학교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대로 24
11	부산대학교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12	부산외국어대학교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 485번길 65
13	신라대학교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700번길 140
14	영산대학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순환로 142

붙임2

자기소개서

○ 평가기준

항목	성장 가능성	목적 부합성	논리성	성실성	진솔성	합계
배점	20	20	20	20	20	100
점수						

○ 채점기준

채점기준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점수	20~18	17~15	14~12	11~9	8~5

○ 자기소개서 작성 항목

1. 자기소개(성장과정 및 가치관 등) (공백 포함 1,000자 이내)

2. 향후 학업 계획(진로 목표, 학업 수행 계획 등) (공백 포함 1,000자 이내)

붙임3

3차 면접 평가 참고자료

- ☐ (심사 대상) 2차 자기소개서 평가 합격자 (상위 1.2배수)
- ☐ (심사 방식) AI 온라인 면접 심사
- ☐ (심사 방법) 평가 항목별 점수 합산 후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발

[평가 항목 및 배점]

항 목	내 용	배 점
성장 가능성	A(40점), B(35점), C(30점), D(25점)	40점
적합성	A(30점), B(25점), C(20점), D(15점)	30점
인성 평가	A(30점), B(25점), C(20점), D(15점)	30점
합 계		100점

※ 상기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동점자 처리 기준) 우선 순위 평가항목* 점수가 높은 자 > 연소자

* 1) 성장 가능성 > 2) 적합성 > 3) 인성 평가

붙임4**KRX 장학생 유지 요건**☐ **학기당 봉사활동 15시간* 이상 이수**

* 봉사활동 실적 인정 기간: (1학기) 1월~6월, (2학기) 7월~12월

※ ‘VMS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 또는 ‘1365 자원봉사포털’ 발급 증빙서류만 인정(타 증빙서류 불가)

※ 장학금 지급 제한(불가) 사유

○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장학금 지급 불가**

- ① KRX 장학생으로서 재단 또는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 ② KRX 재단이 주관하는 장학생 활동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는 경우
- ③ 기타 장학금 지급 중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세부 요건 및 절차는 합격자 발표 이후 KRX국민행복재단에서 별도 안내 예정

붙임5

장학생 확인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장학생 확인서(중·고등학교 KRX DREAM 장학증서 사본 분실자용)

구분	내용
1.성명	
2.생년월일	
3.학교명(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본인은 중·고등학교 KRX DREAM 장학증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나, 해당 서류를 분실하여 제출이 어렵습니다. 이에 한국장학재단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사업 등 아래 내용과 같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하는데 동의합니다.

☐ 기부장학금 심사를 위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KRX국민행복재단용)
 한국장학재단 귀중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사업 운영 및 사후관리 업무 수행
수집·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학교명
보유·이용 기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보존·폐기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기관	■ KRX 국민행복재단
제공·조회 목적	■ 중·고등학교 KRX DREAM 장학생 확인 용도
제공·조회 항목	■ 성명, 생년월일, 학교명
제공·조회 기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보존·폐기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 거부 시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선정·지급 등 수집·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항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21. KOSAF기부펀드 중위소득

1. 사업 목적

- ☐ KOSAF기부펀드 재원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사각지대에 있는 4~6구간 우수 대학생 지원으로 안정적 학업 여건 조성 및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

2. 사업 내용

- ☐ 지원규모: 300백만 원(200만 원 × 150명 × 1개 학기)
-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 전공대, 대학원대, 원격대학(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등),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 신입생·편입생 제외 / 기부장학금 신청 시작일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1개 학기 이상인 자
- ☐ 신청자격: 학자금 지원구간 4~6구간 대학생
-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 지원인원: 150명
 - 대구 소재* 대학: 30명, 이외 지역 대학: 120명
 - * 지역 구분: 학과가 소속된 캠퍼스 소재지 기준 적용
 - ※ 대구 지역 선발 대상자가 30명에 미달할 경우, 이외 지역에서 추가 선발
- ☐ 지원내용: 학기당 20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 지원기간: 1개 학기('26년 2학기)
- ☐ 평가기준: 가계소득(30점) + 성적(70점) + 가산점*(5점)
 - * 가산점 대상(5점 부여, 항목 간 중복 부여 불가)
 - 사회적 배려계층: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학생가장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이동 포함), 다문화가정
- ☐ 동점자 처리기준: 성적 상위자(백분위 점수) >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 직전학기 이수학점 높은 자 > 연소자
- ☐ 제출서류: 사회적 배려계층 확인 서류(택1 선택 제출)
 - ※ 장학금 신청자와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자의 가족관계는 '26-2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함(대상자가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 증빙서류 미제출 및 잘못된 서류를 제출할 경우 심사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장애인:** 장애인증명서(또는 장애인등록증)

※ 장애인 인정 범위: 장학금 신청자 본인

○ **북한이탈주민(북향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북한이탈주민 인정 범위: 장학금 신청자 본인 또는 자녀

○ **학생가장:**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의 사망으로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만 34세 이하 대학생(기혼자 제외)

* 만 나이 기준은 신청 시작일 기준으로 함

○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 포함)**

구분		증빙서류	발급처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 5년 경과 청년 포함)		보호종료확인서	(‘20.9.30. 이전 보호종료)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20.10.1. 이후 보호종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퇴소확인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필수)	아동복지시설
보호연장 아동	아동복지시설*	입소사실확인서 또는 재원증명서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시·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추가 제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 증빙서류 상 보호기관 유형이 ‘아동복지시설’로 명시되어 있지 않을 시 제출	

* 「아동복지법」 상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만 해당 (일시보호시설, 청소년쉼터, 부모동반시설 등은 제외)

※ 당해학기 통합신청으로 자립준비청년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관련 서류 제출 생략 가능

○ **다문화 가정**

※ 외국인 부 또는 모에서 태어난 자녀(기혼자 제외)

- 한국 국적 취득 전: (부 또는 모)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 한국 국적 취득 후: (부 또는 모 중 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등 국적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단, 기본증명서 상 이전 국적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제적등본 제출

22. KOSAF기부펀드 블루버드

1. 사업 목적

- ☐ 범죄 피해자 본인 및 가정의 대학생 대상 생활비 장학금 지원으로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

2. 사업 내용

- ☐ 지원규모: 100백만 원(200만 원 × 50명 × 1개 학기)
-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 전공대, 대학원대, 원격대학(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등),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 신입생·편입생 제외 / 기부장학금 신청 시작일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1개 학기 이상인 자
- ☐ 신청자격: 아래 ① ~ ③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 ①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부모, 형제자매)이 강력범죄 피해 사실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자
 - * 등록 기준일: 2026년 2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 시작일 전일까지 등록된 자
 - ※ 신청자 본인이 피해자인 경우: 신청자 본인이 센터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 신청자가 피해자의 가족인 경우: 피해자(부모·형제자매) 또는 신청자 본인이 센터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등록되지 않은 강력범죄 피해자는 신청 불가
 - ②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 시작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발생한 강력범죄 피해자 및 그 가족(부모, 형제자매)
 - ③ 신청자 본인이 대한민국 국적의 대학생
- ☐ 성적기준: 신청을 위한 최소 성적 기준(컷라인) 없음
 - ※ 단, 선발 심사 평가 시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성적을 점수화하여 반영(최대 30점)
- ☐ 지원인원: 50명
- ☐ 지원내용: 학기당 20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 지원기간: 1개 학기('26년 2학기)
- ☐ 평가기준: 가계소득(50점) + 성적(30점) + 피해·범죄피해자지원센터 추천(20점)*

* [피해·범죄피해자지원센터 추천(최대 20점)]

범죄피해자 구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추천서 제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추천서 미제출
본인	20	10
부모·형제자매	10	5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추천서는 [붙임3]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

- 동점자 처리 기준: 범죄피해 발생일이 최근인 자 > 직전학기 이수학점 높은 자 > 연소자

□ 제출서류

※ 증빙서류 미제출 및 잘못된 서류를 제출할 경우 심사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필수] 범죄피해 사실 확인 서류

- (범죄피해자가 생존한 경우) [붙임1] 범죄피해자 개인(신용)정보 수감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범죄피해자 신분증 사본

※ 범죄 피해자 명의의 동의서 및 신분증 사본 제출 필요(단, 피해자가 장학금 신청자 본인인 경우 동의서 및 신분증 사본 제출 불필요)

- (범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붙임2] 범죄피해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는 범죄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공개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전국범죄피해자연합회에서 사실 여부 확인 예정)

○ [선택] [붙임3]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추천서

※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작성 및 발급받은 추천서만 인정

□ 기타사항(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록 확인 절차)

- ① 한국장학재단은 전국범죄피해자연합회에 심사 관련 정보 제공

- ② 전국범죄피해자연합회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한국장학재단에 제공

※ 범죄피해자 등록 여부 등 제출 내용의 사실 관계 확인은 전국범죄피해자연합회의 '회신일' 정보를 기준으로 확정하여 심사에 적용

붙임1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양식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심사를 위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KOSAF기부펀드 블루버드 용)

한국장학재단 귀중

본인은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자의 가구원으로서 한국장학재단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사업 등 아래 내용과 같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하는데 동의합니다.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사업 운영 및 사후관리 업무 수행
수집·이용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보유·이용 기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보존·폐기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기관	■ 전국범죄피해자연합회
제공·조회 목적	■ 범죄피해자 정보확인
제공·조회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제공·조회 기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보존·폐기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기타 고지 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사업 운영 및 사후관리 업무 수행
개인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 첨부 : 범죄피해자 신분증 사본

위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 거부 시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선정·지급 등 수집·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항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붙임2

범죄피해 확인서 양식

☐ 범죄피해자 확인서(범죄피해자 사망자 확인용)

구분	내용
1. 범죄피해자 성명	
2. 범죄피해자 주민등록번호	
3. 범죄피해자와의 신청자 관계	
4. 등록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본인은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자로서 가족 중 범죄피해자 사망자가 있어 사실 확인 요청드립니다. 이에 한국장학재단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사업 등 아래 내용과 같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하는데 동의합니다.

☐ 기부장학금 심사를 위한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KOSAF기부펀드 블루버드)

한국장학재단 귀중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사업 운영 및 사후관리 업무 수행
수집·이용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보유·이용 기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보존·폐기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기관	■ 전국범죄피해자연합회
제공·조회 목적	■ 범죄피해자 정보확인
제공·조회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제공·조회 기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보존·폐기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첨부 : 가족관계증명서

위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 거부 시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선정·지급 등 수집·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항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붙임3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추천서 양식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추천서

○ 추천 학생 인적사항

학교명		
추천 학생	성명(생년월일)	
	학번	

○ 추천 사유

위 학생을 추천하는 사유 간략히 기재

※ 피해 극복 및 학업 지속을 위한 장학 지원 필요성 등

위 학생을 KOSAF기부펀드 블루버드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추천인: ○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인)

2026년 2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사업
업무처리기준(안)

2026. 8.

한 국 장 학 재 단
인 재 육 성 지 원 부

'26년 2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사업 업무처리기준(안)

I 사업 개요

1. 목적

- ☐ 기부자의 숭고한 기부 취지를 반영한 장학사업 계획 수립 및 집행
- ☐ 다양한 분야의 저소득층 우수 대학생 대상 학자금 지원으로 교육 지원의 다각화 및 미래 우수 인재 양성에 기여

2. 근거

-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사업) 및 제20조(기부금의 모집·접수)
- ☐ 「기부금품 조성 및 운영규칙」 제15조(기부금품 운영위원회)

- ① 기부금품 제반 업무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재단에 기부금품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1. 연간 기부금품 모집 및 기부금품 활용 사업 계획

3. 추진 일정(안)

내용	일정
보도자료 배포 등 선발 공고	~ '26. 8. 25.(화)
장학금 신청 및 서류 제출	'26. 8. 26.(수) 9시 ~ 9. 10.(목) 18시
장학생 심사	'26. 9. 11.(금) ~ 10월 말
장학생 선발 결과 발표	'26. 10월 말

※ 심사 기준일: 2026. 9. 11.(금)

※ 상기 일정은 신청 현황 및 심사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함

* 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학생이 직접 신청

II 공통 선발 기준

1. 학생 신청

☐ 신청 및 서류 제출 기간

- '26. 8. 26.(수) 9시 ~ '26. 9. 10.(목) 18시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 ※ 신청 일정은 신청 현황·심사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함
 -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 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 푸른등대 기부장학금은 동일 학기에 1개 기부자 유형만 신청 가능

☐ 기부자별 신청 서류 제출

- 신청서 작성 시 파일 업로드를 통해 기부장학금 신청 기간 내 제출
 - ※ 재단으로부터 서류 보완 요청 등 통보를 받은 경우 7일 이내 제출, 기한 미준수 시 미제출로 간주

2. 대학 추천

- ☐ 대학은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자의 신청 내역을 검토하고, 이수 학점, 성적, 학적 등을 반영한 학사정보 및 수납원장 제공 (대학 관리자포털 시스템에서 처리)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자료 제출의 요청) ①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0.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의 학사정보: 고등교육기관에 대하여 고등교육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학업 성적 등에 관한 학사정보 자료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대하여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학업 성적 등에 관한 학사정보 자료

- 대학 학사·수납정보 등록 기간 내(심사 이전) 등록 완료
 - ※ 학사정보, 학적 상태, 학과명 등에 대한 심사는 심사 기준일 기준 대학에서 업로드한 정보로 심사 진행

☐ 정보 제공 방식

- 대학은 신청자의 학사정보 및 수납원장을 각각 대학 관리자포털 내 [학사정보관리]와 [수납원장관리]에서 등록
- 학사정보 및 수납원장 수정은 심사 이전 단계까지만 가능

3. 대상자 선정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적용

- 학생 가구원의 2026년 2학기 국가장학금 통합신청 등을 통해 산정된 2026년 2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 장학생 선발 심사 기준일 기준으로 확인된 학자금 지원구간을 심사 시 적용
 - 심사 기준일 기준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되지 않은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10구간으로 간주
- ※ 최초 재단 학자금 지원 시 확정된 학자금 지원구간은 동일 학기 내 변경 불가
- ※ 심사 기준일 기준 최신화 신청 진행 중이거나 심사 기준일 이후 최신화 신청에 의해 변경된 학자금 지원구간은 반영 불가
- 장학생 선발 가계소득·성적 배점표([붙임3] 참고)에 따라 학생 본인이 신청한 기부자 유형의 학자금 지원구간별 점수 적용
-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가 장학금 신청 시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 정보를 고의 또는 실수로 미입력(재외국민 특별전형 'N' 입력)하여 국외 소득재산을 미신고한 경우 심사 제외
 - ※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되어 국내외 소득재산조사 없이 학자금 지원구간 확정된 경우는 예외 처리

□ 성적

- 성적은 대학에서 산출·등록한 직전학기 성적(백분위 점수 및 이수학점) 사용
 - 성적이 Pass/Non Pass 등으로 기재되는 수업 수강 등으로 백분위 성적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산출된 최근 학기를 직전 학기로 적용
- 성적 배점기준([붙임3] 참고)
 - 성적 점수: (직전 학기 백분위 점수) X (기부자별 성적 배점 비율)

□ 장학생 심사

- 적격 여부가 확인된 학생 중 소득·성적 및 기부자별 심사 (자기소개서 등) 등을 진행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

구 분		평가 항목
1차	1단계	○ 적격 여부 확인: 선발 자격조건* 및 서류 확인
	2단계	○ 가계소득 평가: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 ○ 성적 평가: 직전 학기 백분위 성적 평가
2차		○ 기부자 요구에 따라 자기소개서, 면접 심사 등 진행

- * 선발 자격조건: 기부자별 신청 자격, 성적, 소득수준, 이수학점, 학적 상태 등 심사
- ※ 장학금 신청자와 가족관계는 '26-2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함
- ※ 가족관계 판단 여부는 장학금 유형별 심사요건 및 기부자의 요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1·2차 심사 완료 후, 심사기간 동안의 학적 변동 내역을 반영하여 최종 합격자 선발
- 계속장학생은 계속 지원 조건(성적 및 이수학점 등) 충족 여부 심사 후 선발
 - 계속 지원 조건 미충족 시 장학생 자격 상실 및 장학금 지원 중단
- ※ 단, 계속장학생이 졸업 학기인 경우 최소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4. 자기소개서, 면접 심사

□ 심사위원 위촉

-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을 위촉
- 심사위원은 기부자별 평가 기준을 근거로 위촉
- 위촉 세부 계획은 위임전결 규칙에 따라 부서장 전결로 위촉

□ 기능

- 기부자별 사업 목적 및 평가 기준을 근거로 개별 항목을 심사하여 점수 부여
 - 심사 시 AI 검증 시스템을 통해 심사 검증에 활용 또는 심사위원이 자기소개서 생성형 AI 사용 여부·표절률, 면접 분석 결과 등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심사위원에게 제공
- 심사위원이 심사 대상자와 이해관계일 경우 등 제척사유 발생 시, 해당 심사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심사위원 평균 점수로 대체

☐ 심사위원 임기

- 심사위원의 임기는 해당 학기 사업 종료일까지로 함

☐ 심사위원 수당

-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장학재단 예산집행 관리지침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기부자 및 재단 내부 위촉 심사위원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

5. 중복지원 방지

☐ 기본 취지

- 등록금 지원유형에 한하여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등록금 규모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과 중복지원 불가)

※ 등록금 범위: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 선택경비

☐ 중복지원 여부 확인

-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중 생활비 지원유형은 타 장학금 수혜 여부와 무관하게 수혜 가능하며, 등록금 지원유형은 타 등록금성 장학금 포함 당해 학기 총 등록금 범위 안에서만 수혜 가능
- 동일 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 간 중복 지원 불가(신규, 계속장학생 전체 해당)
- 장학생* 선정 후 중복지원이 확인되는 경우 중복지원 사유 해소 시 장학금** 지급

* 수혜를 받는 푸른등대 기부장학금이 학자금 중복지원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 가능

** 단, 해당 학기 지급 일정 마감 전까지만 중복지원 해소 인정 및 장학금 지급 가능함

6. 장학금 지급

☐ 장학금 유형: 등록금 및 생활비 무상보조, 정액 지원

☐ 장학금 지급 방식

- 재단은 장학금을 대학별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지정 계좌로 지급, 대학은 장학금을 학생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7. 사후 관리

□ 장학금 반환

○ 아래 경우 중 1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장학생 자격 상실 및 해당 학기 장학금 반환

- 장학금 수혜 후 군입대·질병·출산·어학연수·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가 등으로 자퇴·제적·타 대학 편입·재입학·졸업 등 학적이 변동될 경우
- 수혜학기가 초과학기일 경우
- 장학생이 타 장학금 수혜 등의 사유로 장학금 수혜 자격을 포기하는 경우

※ 장학금 수혜 자격 포기 시 [붙임6. 장학금 수혜자격 포기 신청서]를 작성 후 공문으로 제출

※ 단, 총 지원기간이 2년 이상인 장학금의 장학생이 휴학 시 장학금 최대 지원 기간 내에 한하여 반환 대상에서 제외

※ 장학금 미반환 시 향후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 반환 대상 금액 산정

- 장학생이 학적 변동 등으로 자격이 상실될 경우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을 준용하여 반환액 산정

반환 사유 발생일*	반환기준	반환 금액 산정(예)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장학금의 6분의 5 해당액	$3,000,000\text{원} \times 5/6 = 2,500,000\text{원}$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장학금의 3분의 2 해당액	$3,000,000\text{원} \times 2/3 = 2,000,000\text{원}$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장학금의 2분의 1 해당액	$3,000,000\text{원} \times 1/2 = 1,500,000\text{원}$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반환금 없음

* 반환사유 발생 일자 계산은 실제 학기 개시일 포함하여 산정

□ 장학금 반환 예외 심의(대학 공문 제출 필수)

○ 장학금 반환 사유 발생 시 반환기준에 따른 반환이 원칙이나, 본인의 중대한 질병, 사망, 사고, 지진·수해 등 천재지변 등에 의해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기부금품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환 대상에서 제외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반드시 [붙임5. 반환 예외 처리 신청서(사유 등 기재)]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대학에서 공문으로 제출해야 함

※ 재단은 반환 예외 신청의 검토 과정에서 필요 시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재단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재단에 제출해야 함

☐ 장학금 환수

- 장학생의 신청 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장학생 자격 상실 및 공공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정 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수금액 환수

「공공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정 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4. '공공재정'이란 공공기관이 조성, 취득하거나 관리, 처분, 사용하는 금품 등을 말한다.

□ 제8조(부정 이익 등의 환수)

- ① 행정청은 부정 청구 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 이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이하 "부정 이익 등"이라 한다)를 환수하여야 한다.
- ② 행정청은 부정 이익 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공공재정지급금 지급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8. 기타 공통사항

☐ 선발 관련 예외사항 처리

- 선발 관련 기준이 각 사업별 선발 계획에서 정한 사항과 푸른등대 기부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 상 구체적인 내용이 없거나 그 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기부자와 협의하여 부서장 전결로 처리

☐ 계좌 관리

- 사업 전용계좌 신규 개설 또는 변경 시 재단으로 변경 요청 공문 발송
 - 대학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표지(첫 페이지) 사본을 붙임으로 하여 발송

☐ 발생 이자 처리

- 기부장학금 대학 지급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대학 자체 수입 처리

붙임 1.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2. 신청인 동의서
 3. 장학생 선발 가계소득·성적 배점표 4.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대상 범위 및 예외사항
 5. 장학금 반환 예외 심의 신청서 6. 장학금 수혜자격 포기 신청서. 끝.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한국장학재단 귀중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 본인과 의 금융거래 관련 계약, 장학금 지급 및 사후관리, 학자금지원 효과성분석 관련 조사, 인재육성지원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및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3조, 제2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15조제2항,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재단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학재단법’) 제16조의 사업 등 아래 내용과 같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하며 재단이 학자금대출 및 동 대출의 연체, 장학금 등 학자금지원과 관련된 정보(기존 재단 수혜정보 포함)를 본인의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법정 대리인, 본인 소속 또는 소속예정인 고등교육기관에 제공 및 활용(가구원 상담 포함) 하는 데 동의합니다.

* 금융거래라 함은 여신업무, 부수업무(사후관리 업무 등)와 관련된 거래를 의미합니다.

* 재단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2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45조의2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해 정보주체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금융거래관계(학자금대출)의 설정 여부 판단 ■ 금융거래관계(학자금대출)의 설정·유지·이행·관리에 필요한 정보 수집 ■ 본인의 학자금지원심사 및 신용 판단 ■ 제출 자료의 진위확인, 가족관계(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및 자녀) 확인, 장학대상자, 인재육성지원 대상자 선발·관리 등 ■ 장학재단법 제50조의5 및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제39조 중복 지원의 방지 및 중복 지원금 환수 업무 수행을 위한 재산조사, 채권보전조치, 강제집행 등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에 관련된 조사(패널조사 등)의 시행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개발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지원통계 현황 조사·분석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4호의2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공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학자금 지원 사업 관리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인재육성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인재육성지원 조사·분석·연구 ■ 장학재단법 제20조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및 조사·분석·연구 ■ 분쟁 해결, 민원 처리, 금융사고 조사 ■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사업 운영 및 사후관리 업무 수행 ■ 기타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수행 ■ 법령상 의무이행 등
수집·이용 항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직업, 직장,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등 연락처, 연계정보(Connecting Information, CI) ■ 개인대출현황 ▶ 본 계약 이전(정부보증학자금 대출현황 포함) 및 이후 재단으로부터 받은 대출 포함 ■ 채무보증현황 ▶ 본 계약 이전(정부보증학자금 보증현황 포함) 및 이후의 보증포함 ■ 금융거래정보 ▶ 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등), 거래일시, 상환정보, 대출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 신용능력정보 :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사실 등 ▶ 공공정보: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과 관련된 결정, 파산선고·면책·복권과 관련된 결정, 공공기관의 신용회복지원 등 ■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 학자금지원정보 ▶ 학자금대출(재단 외 타기관 대출정보 포함), 장학금(재단 외 타기관, 교내 장학금 정보 포함), 재단의 학자금 지원구간 ■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기업체, 공공기관 등) 연계 학자금대출 상환부담 경감 원리금 지원사업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업무와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국가 장학사업 운영관리 및 공공재정지급금 환수와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기타 금융거래관계의 설정에 필요한 정보 ▶ 학자금 지원구간·소득인정액 산정관련 가구원 소득, 자산 및 부채 정보(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가족관계증명 등), 상환정보, 출입국정보, 해외이주에 대한 정보, 국내거소신고 정보,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록 정보, 주민등록등·초본 전산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구원 전출입, 사망, 말소, 거주불명등록자 등),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정보, 한부모가족정보, 장애인정보, 차상위정보, 병역정보(입영 및 전역 등 병무이행 관련 정보),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 정보, 등록금 정보, 고등교육기관의 학사정보 및 수납정보, 4대 보험 가입정보(직장 및 고용·급여정보 등), 사업자 등록정보, 부동산 정보, 학자금 지원 정보,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심사를 위한 정보(본인 및 보호자의 거주이력 정보, 농·어업 종사정보 등), 수능정보, 내신(학생부 등)정보, 고객이 제공한 정보(거주기간, 군필여부, 학생 계좌정보, 보호자정보 등) 학점은행제 학위취득 등에 관한 사항,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퇴소조치 등에 관한 정보 등 ※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보유·이용 기간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학자금 지원, 인재육성지원 종료일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지원 종료 후에도 장학재단법 제16조(사업) 및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장학금 사후관리 업무,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 이행 및 귀 재단의 리스크 관리업무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보존·폐기
수집·이용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을 통하여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 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u>[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u>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민감 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민감정보: <u>[장애인정보]</u>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거래 관계 설정·유지·조건, 장학금 신청·선정·지급, 인재육성지원 사업 관련 선발 등 수집·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항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
 조회
 대상
 기관

- 장학재단법 제50조의2, 제50조의3 및 제50조의5제2항 각호 등에 따른 기관
 - ▶ 대법원
 - ▶ 관계행정기관(교육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재정경제부, 법무부, 외교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국가보훈부 등과 국세청, 병무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고용노동부 등 그 산하기관)
 - ▶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 ▶ 장학재단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고등교육기관(본인이 소속 또는 소속 예정)
 - ▶ 금융회사 등
 -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
 - ▶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로부터 학자금에 관한 지원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고용정보원
 - ▶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으로서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 재단법인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에 관한 지원을 하는 공공기관
 -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기금 또는 경비를 투자하거나 출연 또는 보조하는 기관
 -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 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 중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에 관한 지원을 하는 법인
 -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국군재정관리단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연구센터 포함)
- 「신용정보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포함), 신용정보회사, 신용조회회사(코리아크레딧뷰로(주), NICE평가정보(주) 등)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정의에 따른 대학, 연구기관, 연구개발서비스업 등
- 학자금 지원 및 인재육성지원사업을 위한 기부금 기부자(푸른등대 기부 장학금 등)
-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기관
 -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단, 2026. 7. 1.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2026. 7. 1. 이후부터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서비스를 도매제공 받아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포함한다)로 변경] ■ 업무위탁업체 ▶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위탁업체 : 장학금 등 학자금 지원 관련 안내 및 상담업체, DM 발송업체, 장학생 교육업체, 조사전문업체, 연구용역 수행자, 인재육성지원 및 장학금 지원 업무 대행업체(선발, 자기소개서 및 면접 평가 AI 검증, 행사, 운영, 관리) 등 ▶ 재단은 수탁업체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
제공· 조회 목적	■ 본인의 학자금지원심사 및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 장학재단법 제50조의5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조 중복 지원의 방지 및 중복지원금 환수 업무 수행 등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에 관련된 조사(패널조사 등)의 시행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대학의 등록금 및 학자금지원 통계현황 조사·분석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인재육성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인재육성지원사업 조사·분석·연구 ■ 장학재단법 제20조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및 조사·분석·연구 ■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 장학사업, 학자금지원 효과성분석 관련 조사, 인재육성지원사업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경우로써 위탁 관련 업무의 수행 ■ 법령상 의무이행 등 ■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 대한 제공 ▶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 자료로 활용 ▶ 본인 확인 목적의 연계정보(CI) 생성 ■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사업 운영 및 사후관리 업무 수행
제공· 조회 및 요청할 개인 (신용) 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직업, 직장,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등 연락처, 연계정보(Connecting Information, CI) ■ 개인대출현황 ▶ 본 계약 이전(정부보증학자금 대출현황 포함) 및 이후 재단으로부터 받은 대출 포함 ■ 채무보증현황 ▶ 본 계약 이전(정부보증학자금 보증현황 포함) 및 이후의 보증포함

	■ 금융거래정보 ▶ 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등), 거래일시, 상환정보, 대출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 신용능력정보 :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사실 등 ■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게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금융거래정보, 상환정보, 신용거래정보,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신용도판단정보, 공공 정보, 신용능력정보 ■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기업체, 공공기관 등) 연계 학자금대출 상환부담 경감 원리금 지원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정보 ■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연계 신용 회복지원제도 업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관련 업무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정보 ■ 학자금지원정보 ▶ 학자금대출(재단 외 타기관 대출정보 포함), 장학금(재단 외 타기관, 교내 장학금 정보 포함), 재단의 학자금 지원구간 ■ 기타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인재육성지원을 위한 사업수행, 장학사업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 학자금 지원구간·소득인정액 산정관련 가구원 소득, 자산 및 부채 정보(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가족관계 증명 등), 상환정보, 출입국정보, 해외이주에 대한 정보, 국외이주신고 및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정보, 주민등록등본 전산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구원 전출입, 사망, 말소, 거주불명등록자 등),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정보, 한부모가족정보, 장애인정보, 차상위정보, 병역정보(입영 및 전역 등 병무이행 관련 정보), 등록금 정보, 고등교육기관의 학사정보 및 수납정보, 4대보험 가입정보(직장 및 고용·급여정보 등), 부동산 정보, 학자금 지원 정보,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심사를 위한 정보(본인 및 보호자의 거주이력 정보, 농·어업 종사정보 등), 수능정보, 내신(학생부 등)정보, 고객이 제공한 정보(거주기간, 군필여부, 학생 계좌정보, 보호자정보 등), 학점은행제 학위취득 등에 관한 사항,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퇴소조치 등에 관한 정보 등 ■ 법적근거 : 장학재단법 제50조의2,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제20조, 제37조 및 제38조,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시행령」제45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등 ■ 위탁업체에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수집·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위탁업무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 「전자정부법」 제38조(공동이용 행정정보)에 따라 제공·조회되는 정보 ※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제공 받은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개인(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장학재단법 제50조의5(중복지원의 방지) 등 장학금 사후관리, 인재육성 지원 사업 관련 필요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보존·폐기

제공· 조회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신용조회회사 및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은 본인의 개인신용평점을 최초로 산정하거나 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 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적 동의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거래 관계 설정·유지·조건, 장학금 신청·선정·지급, 인재육성 지원 사업 관련 선발 등 제공·조회 목적과 관련된 사항에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3. 행정정보 이용에 관한 사항

- ☐ 본인은 학자금지원 신청 및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행정기관,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를 귀 재단이 다음과 같이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일부 행정정보의 경우, 추가적인 서류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 이 동의서에 근거하여 본인의 행정정보를 활용한 신청인의 장학재단법 제3조에 따른 고등 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 포함)을 위한 매학기 신청, 변동정보의 관리 등의 업무처리 및 학자금지원 사후관리 처리 시에도 본인의 행정정보를 귀 재단이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별도의 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행정정보: 주민등록등(초)본(개명이력, 주소이력, 주민등록번호정정·변경이력 등), 가족관계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정보 등), 주민등록전입세대열람, 국내거소사실증명원,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국민연금수급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자활근로자확인서,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연금,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국외이주신고증명서, 해외이주신고증명서, 병적증명서, 건축물대장(총괄), 건축물(대장) 소유현황정보, 일반·집합건축물대장,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건축물, 집합건물), 토지(임야)대장, 산재보험근로자고용정보확인서,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소득금액증명, 휴·폐업사실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고용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고용·산재보험가입증명원,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상용), 출입국정보, 개인별부과고지산출내역서(근로자개인별월평균보수),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재산세),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건설기계등록원부(갑), 화재증명원,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등

■ 행정정보 이용의 목적 및 이용범위:

- 장학재단법 제16조(사업)에 따른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개발, 학자금 지원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 통계 현황 조사·분석,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공,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법인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학자금 지원 사업 관리,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장학금 사후관리,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학자금 지원 등에 관련된 사업
- 장학재단법 제50조의2(자료 제출의 요청)
- 장학재단법 제50조의4(자료 요구 및 질문)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재산 관계 공부의 열람 등)

■ 이용기관의 명칭: 한국장학재단

행정정보 이용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행정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4. (선택사항-푸른등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부장학금 신청자 대상)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에 관한 사항*

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공공 마이데이터)

*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란, 정보주체가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제공요구권)에 근거하여 행정기관 등이 전자적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본인이나 본인이 지정하는 자로서 본인정보를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려는 자에게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행정기관이 정보주체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자에게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정보주체는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제도 이용에 필요한 행정서류를 본인이 직접 발급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제공요구서'와 '개인 정보처리 동의서' 작성만으로 서류제출을 간편하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일부 행정정보의 경우, 추가적인 서류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은 공공 마이데이터 유통체계를 통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전자정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본인의 동의 및 제공 요구가 필요합니다.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가.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 · 이용목적	▶ 공공 마이데이터 유통체계를 통한 공공 마이데이터의 조회·수집·이용
보유 · 이용기간	▶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학자금 지원 종료일(학자금대출의 경우 대출계약 종료일*로부터 10년)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 · 이용됩니다. 단, 지원 종료 후에도 장학재단법 제16조(사업) 및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학자금대출채권 관리업무,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에 따른 최신화 처리 및 가구원 제외심사, 장학금 사후관리 업무,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귀 재단의 리스크 관리업무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재단과 거래 중인 모든 학자금대출 전액 상환 및 서비스(전자금융거래 등)가 종료한 날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필수적으로 동의해야만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의 신청 및 결과를 제공 받을 수 없어, 학자금지원 서비스에 필요한 해당 부분 관련 서류를 귀하가 직접 재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보존·폐기

[수집·이용 항목]

 고유식별정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6에 따라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 정보 활용 시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가능합니다.
 개인(신용)정보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CI값*
↳ 일반개인정보	* CI(Connecting Information)값: 서비스 연계를 위해 본인확인기관에서 부여하는 개인식별전산정보
위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나. 제공(재단의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공공 마이데이터 유통체계) ▶ 데이터 보유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행정안전부, 병무청, 국세청, 법무부,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법원행정처, 산림청, 외교부 ▶ 본인확인기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근거한 본인확인기관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공공 마이데이터 유통체계를 통한 공공 마이데이터의 조회·제공 ▶ 공공마이데이터 연계를 위한 연계정보(CI값)의 생성·조회·제공
보유 및 이용기간	▶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학자금 지원 종료일(학자금대출의 경우 대출계약 종료일*로부터 10년)까지 위 이용목적에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지원 종료 후에도 장학재단법 제16조(사업) 및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학자금대출채권 관리업무,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에 따른 최신화 처리 및 가구원 제외심사, 장학금 사후관리 업무,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귀 재단의 리스크 관리업무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재단과 거래 중인 모든 학자금대출 전액 상환 및 서비스(전자금융거래 등)가 종료한 날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필수적으로 동의해야만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의 신청 및 결과를 제공 받을 수 없어, 학자금지원 서비스에 필요한 해당 부분 관련 서류를 귀하가 직접 재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공 항목]

 고유식별정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6에 따라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 정보 활용 시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가능합니다.
 개인(신용)정보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CI값*
↳ 일반개인정보	* CI(Connecting Information)값: 서비스 연계를 위해 본인확인기관에서 부여하는 개인식별전산정보
위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본인 행정정보 제공 요구서

■ 정보주체에 관한 사항

- 성명 : (입력 신청 정보 자동 연계)
- 생년월일 : (입력 신청 정보 자동 연계)
- 연락처 : (입력 신청 정보 자동 연계)

■ 본인정보 제공·이용에 관한 사항

- 이용기관 : 한국장학재단
- 묶음정보 서비스명 : 학자금 지원 서비스
- 묶음정보 이용목적 : 학자금 지원 서비스 신청에 필요한 본인정보 제공
- 제공 요청 유형 : 일회성 제공
- 보관·저장 및 이용 기한 : 10년
- 정기적 제공 요청 상세내용
 - 주기 : 해당 없음
 - 종료시점 : 해당 없음

▶ 보유 및 이용기간

- 본 요구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제공하신 본인정보는 제공요구 일로부터 학자금 지원 종료일(학자금대출의 경우 대출계약 종료일*로부터 10년)까지 본인정보 제공목적에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지원 종료 후에도 장학재단법 제16조(사업) 및 장학금 사후관리 업무,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재단의 리스크 관리업무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재단과 거래 중인 모든 학자금대출 전액 상환 및 서비스(전자금융거래 등)가 종료한 날

■ 본인정보에 관한 사항

보유기관 (보유기관명)	본인정보 명칭 (필요 행정정보명)	상세항목 (항목값)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표 등·초본	(열람대상자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의 현주소, 도로명주소·현재 (세대주정보)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록상태, 변동사유 (호주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원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관계, 세대편입일, 변동일, 변동사유 (발급일자) 년, 월, 일 (행정동명) 행정동명 (주민번호정정이력) 정정이전주민번호, 정정이후주민번호, 주민번호정정일자, 주민정정사유 (성명정정이력) 정정이전성명, 정정이후성명, 성명정정일자, 성명정정사유 (주소이력) 성명, 전입일, 변동일, 변동사유, 주소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제1항 및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24조에 따라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위와 같이 제공 요구합니다.

(예(제공 요구합니다) ☐ 아니오(제공 요구하지 않습니다) ☐)

본인 행정정보 보유기관 귀하

※ **정보주체 유의사항:** 정보주체가 위 사항에 대해 제공 요구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제공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본인정보 제공 목적에 따른 처리를 위해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동의서

한국장학재단 귀중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의 장학금(이하 “학자금지원”) 신청인으로서 신청 및 선정 과정에서 다음사항을 성실히 준수하며 위반할 시 매학기 학자금지원이 제한(학자금지원 신청 취소 포함)될 수 있음을 이해하였고 동의합니다.

1. 학기별 가족정보 활용

본인은 동일학기에는 최초 학자금지원 신청 시 입력한 가족정보를 재단의 모든 학자금지원사업의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등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학자금지원금 반환 등 동의

가. 학자금반환 및 허위서류 제출에 대한 제재

본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재단으로부터 받은 학자금지원금을 재단 또는 대학(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기관 포함)으로 즉시 반환(환수 포함)할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학자금 수혜 후에도 학자금 신청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거나 관련 정보의 누락 또는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여 고등교육기관, 은행, 한국장학재단 등에 제출한 경우에는 3년 내의 학자금지원 제한에 동의하며, 반환 등 민형사상 책임 및 공공재정환수법 적용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수하겠습니다.

- 학자금 목적 외 사용
- 부득이한 사정(휴학, 자퇴, 제적, 기타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에 준하여 산정된 반환기준 준용)*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기준	반환 금액 산정(예)
학기 개시일부터 30일 까지	장학금의 6분의 5 해당액	$\frac{2,166,666\text{원}}{2,600,000\text{원}} \times \frac{5}{6}$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장학금의 3분의 2 해당액	$\frac{1,733,333\text{원}}{2,600,000\text{원}} \times \frac{2}{3}$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장학금의 2분의 1 해당액	$\frac{1,300,000\text{원}}{2,600,000\text{원}} \times \frac{1}{2}$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반환금 없음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반환금 산정

- 장학금 신청 당시 본인, 부모 또는 배우자의 금융자산,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 회원권(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등) 보유 등으로 학자금 지원구간이 변경된 것이 확인된 경우
- 학자금지원금 지급 이후 수혜자 본인의 해외이주신고 및 영주권자로 확인된 경우
- 학자금지원금 지급 이후 선발 당시 자격미달(연령, 제한대학, 해당학과, 학적·등록(상태), 성적, 이수학점, 특별추천, 학자금 지원구간, 대출제한 등)한 것이 발견될 경우(대학(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기관 포함) 및 재단이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시 해당 대학(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기관 포함) 및 재단에 반환)

나. 반환 동의

본인은 재단으로부터 수혜한 학자금 지원금의 반환의무 발생 시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에 반환하는 데 동의합니다.

3.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및 반환(상환) 동의

본인은 교육부 또는 재단의 학자금지원을 포함한 등록금 목적의 학자금 수혜(본인의 부모 소속기관으로부터 받는 등록금 지원을 포함) 총액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하며, 한 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학자금(학자금 중복지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학자금)을 지원받을 경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5(중복지원 방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조(중복지원 방지)에 따라 초과금액 반환 의무가 부과되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6,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4 규정에 따라 학자금 초과금액을 반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재단 및 외부기관에서 지원받은 장학금과 학자금대출 잔액의 합계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할 경우 장학금은 대출로 직접 상환될 수 있으며, 이후 장학금 취소 및 반환 등의 사유 발생 시 해당 대출 상환금액이 상환 취소될 수 있고, 재단은 재단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지원[학자금대출(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 및 국가장학금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본인은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가. 이행장소 및 준거법

- 1) 중복지원금 반환의 이행 장소는 재단 본사로 합니다. 다만, 중복지원금의 반환 관리 등의 사유로 관련 업무를 재단의 지역사무소, 지역센터 등으로 이관한 경우 이관 받은 지역사무소, 지역센터 등을 이행장소로 합니다.
- 2) 중복지원금 반환 대상자가 내국인이 아니거나, 재외국민 또는 해외이주신고를 한 경우라도, 중복지원금 반환에 관하여 국내법을 적용합니다.

나. 관할법원의 합의

이 동의서에 근거한 중복지원금 반환에 관하여 재단과 신청인(또는 그 관계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재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학자금 중복지원의 범위>

구분	종류
학자금대출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예)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등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등) 학자금대출 예) 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및 군인자녀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 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부),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근로자학자금 대부(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공공기관에서 직원 및 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학자금 대부,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등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예)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I·II 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대통령 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대학 전문기술인재장학금,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I 유형),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II 유형)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기관 등) 장학금 예) 교내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직원 및 직원 자녀 장학금, 학점은행제 학습자 대상(평가인정 학습과정)으로 지원하는 장학금 등
중복지원 예외사항	① 국가근로장학금, BK21 연구장학금 등 연구활동 보조비,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다문화·탈북(이주·북한배경)학생 멘토링장학금, 대학생 청소년 AI 교육지원장학금 등 대가성 장학금 및 군가산복무지원금(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제 11조제1항)을 비롯한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주거안정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②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③ ①, ②에 준하는 학자금대출 및 장학금으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지정한 경우 ※ 단, 등록금 지원 목적으로 장학금을 수여한다는 점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나는 경우 불인정

<학자금 범위>

구분	내용
등록금	고등교육기관에서 등록을 통해 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비용
생활비	숙식비·교재구입비·어학연수비·교통비 등 학업 유지 생활비용

4. 학자금 중복지원금 반환 관련 동의

본인은 재단의 학자금지원 신청인으로서 중복지원금 반환과 관련하여 원활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한 재단과 신청인 사이에 정한 아래의 사항을 이해하였고 성실히 이행함에 동의합니다.

가. 적용범위

이 동의서는 중복지원금 반환과 이와 관련된 재단과 신청인과의 모든 거래에 적용됩니다.

나. 신고사항의 변경

본인이 이미 신고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재단에 신고하겠습니다.

다. 통지의 효력

- 1) 재단이 신청인이 신고한 최종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 2) 신청인이 ‘나’ 항에 의한 변경 신고를 게을리함으로 말미암아 ‘가’ 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가 신청인에게 연락하거나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 3) 재단이 신청인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그 발신의 사실관계를 서면 등으로 명백히 관리하고 있는 때에는 발송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 4) 학자금 중복지원 중 공공재정환수법 적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5. ‘부정청구 등’에 해당하는 학자금 수혜 시 처분 관련 동의」의 통지 내용을 적용합니다.

라. 중복지원금 반환 및 비용의 부담

- 1) 신청인은 교육부 또는 재단의 학자금 지원을 포함한 등록금 목적의 학자금 수혜(본인의 부모 소속기관으로부터 받는 등록금 지원을 포함) 총액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할 경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5(중복 지원의 방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조(중복 지원의 방지)에 따라 반환의무가 발생되며, 중복지원금을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1) 반환의무 미이행 또는 지연 시 재단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5(중복 지원의 방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조(중복 지원의 방지) 및 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을 위한 법적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아래의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① 반환의무자(채무자) 또는 법적으로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한 재단의

채권, 담보권의 행사나 보전[가압류 또는 가처분(그 해지도 포함)등을 말함]

② 담보목적물의 조사 또는 추심

③ 반환의무이행(채무이행)의 독촉을 위한 통지

④ 기타 법적절차 진행 시 발생하는 비용 등

(2) 제 (1)항에 의한 비용을 신청인이 지급하지 않아서 재단이 대신 지급하는 경우 신청인은 이를 곧 갚아야 합니다.

5. ‘부정청구 등’에 해당하는 학자금 수혜 시 처분 관련 동의

본인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행위(아래에 해당하는 행위로 재단의 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부정이익을 얻는 행위) 시, 동법 제6조(부정청구등 금지), 제7조(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제9조(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안내받았으며, 이후 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 처분을 감수하겠습니다.

가. 부정청구 유형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자금지원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학자금지원을 청구하는 행위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학자금지원보다 과다하게 학자금 지원을 청구하는 행위
- 3) 법령·자치법규 및 재단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학자금지원을 사용하는 행위
- 4) 그 밖에 학자금지원이 잘못 지급된 경우

나. 조사 협조

본인은 신고 및 재단의 정기적인 조사로 부당청구 등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재단 및 대학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조사불응 및 대응을 포기함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다. 의견제출·이의신청·행정심판

본인은 조사 시 입증 및 사건 관련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처분 시에도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등의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안내받았습니다.

라. 부정이익, 이자, 제재부가금, 가산금

본인은 공공재정 환수 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부정이익, 이자, 제재부가금, 가산금을 납부할 것을 약속합니다.

마. 통지

- 1) 본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홈페이지 고지 및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 2) 재단은 본인의 조사·행정처분 및 권리침해 등 중요한 법률 행위에 대하여 우편 방식을 포함하여 통지합니다.
- 3) 본인은 우편으로 통지받기 위하여 재단에 제공한 주소와 우편주소(전자우편 주소 포함)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붙임3

장학생 선발 가계소득 · 성적 배점표

※ 심사 시작일(26. 9. 11.(금)) 기준 산정된 학자금 지원구간이 없을 시 학자금 지원구간 10구간으로 간주
 ※ 기부자별 가계소득 및 성적 평가 배점 기준은 각 기부자별 사업 계획서 참고

1. 가계소득 평가 배점표

평가 비율	기초 차상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9구간	10구간
70%	70	67.9	65.8	63.7	61.6	59.5	57.4	55.3	53.2	51.1	49
60%	60	58.2	56.4	54.6	52.8	51	49.2	47.4	45.6	43.8	42
50%	50	48.5	47	45.5	44	42.5	41	39.5	38	36.5	35
40%	40	38.8	37.6	36.4	35.2	34	32.8	31.6	30.4	29.2	28
30%	30	29.1	28.2	27.3	26.4	25.5	24.6	23.7	22.8	21.9	21
20%	20	19.4	18.8	18.2	17.6	17	16.4	15.8	15.2	14.6	14

2. 성적 배점 기준

- 직전학기 백분위 점수 × (본인이 신청한 기부자별 성적 배점 비율)

[가계소득 및 성적 점수 산출 예시]

① 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직전학기 백분위 점수가 90점인 경우

1) '가수 윤하' 기부장학금 신청 시 [(1차 평가기준) 가계소득(30점) + 성적(70점) 적용]

→ 가계소득 환산 점수 27.3점 + 성적 환산 점수 63점(90점 × 70%) = 90.3점

2) '포스코 희망이음' 기부장학금 신청 시 [(1차 평가기준) 가계소득(40점) + 성적(30점) + 산업재해 장애등급 및 경과 기간(최대 10점) + 산업군 및 사업장 규모(최대 20점) 적용]

→ 가계소득 환산 점수 36.4점 + 성적 환산 점수 27점(90점 × 30%) = 63.4점

②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직전학기 백분위 점수가 80점인 경우

1) '나이스(NICE)그룹' 기부장학금 신청 시 [(1차 평가기준) 가계소득(20점) + 성적(80점) 적용]

→ 가계소득 환산 점수 15.2점 + 성적 환산 점수 64점(80점 × 80%) = 79.2점

2) 'KOSAF기부펀드 블루버드' 기부장학금 신청 시 [(1차 평가기준) 가계소득(50점) + 성적(30점) + 피해·범죄피해자지원센터 추천(20점) 적용]

→ 가계소득 환산 점수 38점 + 성적 환산 점수 24점(80점 × 30%) = 62점

붙임4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대상 범위 및 예외사항

구 분	종 류
학자금대출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예)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농어촌출신 대학생학자금융자 등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 법인, 기업, 대학,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등) 학자금 대출 예) 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및 군인자녀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부),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 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근로자학자금 대부(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공공기관에서 직원 및 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학자금 대부,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등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예)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I · II 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100년 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전문기술인재장학금, 푸른등대 기부 장학금, 중소기업 취업연계장학금(희망사다리 I 유형),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II 유형)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 법인, 기업, 대학,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기관 등) 장학금 예) 교내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교육비 면제 포함),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서울희망대학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장학금, 호국장학재단 장학금, 직원 및 직원 자녀 장학금 등
중복지원 예외사항	① 국가근로장학금, BK21 연구장학금 등 연구활동 보조비,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다문화·탈북(이주·북한배경)학생 멘토링 장학금, 대학생 청소년 AI 교육지원장학금 등 대가성 장학금 및 군가산복무지원금(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을 비롯한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주거안정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②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③ ①,②에 준하는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으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지정한 경우 ※ 단, 등록금 지원 목적으로 장학금을 수여한다는 점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나는 경우 불인정

붙임5

장학금 반환 예외 심의 신청서 (※ 대학 공문 제출 필수)

장학금 반환 예외 심의 신청서

인적사항	성 명		대학명	
	전화번호		학과	
	휴 대 폰		E-mail	
	주 소			

장학금 수혜현황	장학금 수혜학기	년도 학기	반환 대상 금액	원
-------------	-------------	-------	----------	---

반환 예외 심의 신청사유	(상세히 기술할 것)
---------------------	--

상기 내용과 같이 장학금 반환 예외 심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_____ (인)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신청자 확인 사항	- 증빙 서류 제출 : 반환 예외 심의 증빙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일체. - 재단은 반환 예외 신청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재단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재단에 제출해야 함.
--------------	--

붙임 6

장학금 수혜자격 포기 신청서 (※ 대학은 재단으로 공문 제출)

장학금 수혜자격 포기 신청서

인적사항	성 명		대학명	
	전화번호		학과	
	휴 대 폰		E-mail	
	주 소			

수혜 대상 장학금	장학금 수혜학기	년 도 학기	지원내용	원
--------------	-------------	--------	------	---

수혜자격 포기 사유	(사유 기재)
---------------	-------------------------------------

상기 내용과 같이 장학금 수혜자격을 포기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_____ (인)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